

인사말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05
국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07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09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	11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13

발제

발제 1 : 학령인구 감소시대, 초등돌봄 정책의 방향 _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8
발제 2 : 늘봄학교 24년 1학기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_ 강은희 (전)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진보정책연구원 기획자문위원	28

토론

토론 1 : 오민애 _ 국민입법센터 변호사	58
토론 2 : 최 영 _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72
토론 3 : 문경진 _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80
토론 4 : 정부교 _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	82
토론 5 : 권영은 _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104
토론 6 : 이희진 _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	108
토론 7 : 손재광 _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	116

인사말



**방과후 돌봄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초등돌봄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
-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결성을 촉구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민태호입니다.

오늘 늘봄학교 토론회를 함께 열어주신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번의 토론회로 그치지 않고, 올바른 늘봄학교 정책이 정착될 때까지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작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한 이후, 벌써 1년 6개월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형화된 모델이 없고, 과행운영과 혈세 낭비가 여전합니다. 사례는 발제와 토론에서 낱알이 폭로될 것입니다. 10년 뒤 2034년 초등학교는 한 반에 학생이 9명이 된다는데, 이러다가 몇 년의 시간을 또 다시 허송세월로 보낼까 두렵고 초조합니다.

첫째, 늘봄학교가 애초의 지향점과 달리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늘봄학교의 정책목표가 교사 업무 배제가 전부인 것처럼 변질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늘봄지원실의 신설 및 관리책임자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공백 돌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과도한 예산 집행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의 합반과 학생 끼주기를 거듭하면서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혼란 돌봄’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할, 방과후 돌봄노동자들이 배제된 채 정책이 추진될 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둘째, 초등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등 방과후 돌봄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초등돌봄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초등돌봄전담사 인력확충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던 초등돌봄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부, 교육청 등 노사정 정책협의기구가 꾸려지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초등돌봄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초등돌봄 정책이 안착되려면,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는 직영 돌봄의 법제화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법제화에 정치권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무법상태의 방과후돌봄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못하고, 초등돌봄 정책의 실패를 이끌었던 민간 위탁과 지자체 이관 주장이 정책의 안착을 흔들고 있습니다.

넷째,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늘봄학교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없습니다. KDI(한성민 연구위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의 강화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로 연결됩니다. 늘봄학교가 초등교육의 책임자인 초등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 없이 추진되면서, 소외감과 현장 외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초등돌봄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 근무 시행으로 학생 간 돌봄 차별을 없애고, 자격증을 전제로 채용되는 타 직종과 비교하여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저출생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나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공교육의 사명을 다해야 하고, 교육복지의 한 축인 초등돌봄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1980년대 초 중고교생 사교육 참여율이 6%였는데, 2022년 사교육 참여율이 78.3%입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의 핵심정책인 초등돌봄정책의 성공을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출되는 소중한 의견을 정부와 교육감들이 제대로 듣고, 노사정 정책 협의기구를 꾸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민태호



<교육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장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봄학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초등돌봄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님과 강경숙·정혜경 의원님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 정권은 국가교육 책임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늘봄학교 추진’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학기에 처음 늘봄학교를 시행했으며, 2025년까지 최종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봄학교가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시직·기간제 등 불안정한 인력 채용문제를 비롯해 교원의 행정실무 부담 문제, 돌봄전담사 업무 과중 문제, 물리적인 공간 부족 문제 등 늘봄학교 도입 취지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선과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돌봄은 필수적인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조급해서는 안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돌봄의 온전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속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가의 아낌없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 역시 그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늘봄학교가 학교구성원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대한민국의 초등돌봄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개선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대책을 꼼꼼히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학교 구성원 여러분 모두의 고충이 없는 그 날까지 함께 언제나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국회 교육위원장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 여러분과 주관해주신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문정복 교육위원회 간사님, 정혜경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절벽 너머 절멸입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 3.34명이었던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절반 이하인 1.51명으로 반 토막을 밑도는 충격적 수치를 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지만, 반면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 등 공적 돌봄 이용률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3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에 따르면, 온종일 돌봄 이용 희망비율은 2019년 30.2%에서 2023년 49.5%로 4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공적돌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초등돌봄과 방과후를 통합한다는 취지의 ‘늘봄학교’ 정책은 도입 초기부터 임시직·기간제 등 불안정한 인력 채용의 문제, 교원의 행정실무 부담, 돌봄전담사에게 업무 전가 등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학교 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

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해내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정재훈 서울여대 복지학과 교수님, 강은희 (전)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각층의 교육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늘 힘써주시는 모든 교육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 정책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여러분과 정혜경 의원님, 그리고 함께 뜻을 모아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논의되는 ‘늘봄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국가의 초등교육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자라날 수 있고, 학부모들 역시 걱정 없이 아이들을 맡기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어, 맞벌이 가정이 많은 우리 사회에선 오랜 시간 기다려 온 반가운 정책입니다.

예정보다 조금은 이르게 시작된 늘봄학교 정책이었음에도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목소리에 다행스러운 한편, 불분명한 행정절차 및 아이들의 안전 등 여전히 남아있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선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이 들곤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전반적인 우리 초등돌봄 정책의 미비한 부분들을 국가와 우리 국회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고견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오늘의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돌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끝없는 고민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해주신 교육계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개인 발전을 존중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 해주길 기대하며 학부모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여, 우리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 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역시도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더 큰 만족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 정책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오늘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강경숙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과 함께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 정책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들 돌보느라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토론회까지 열어주신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님들, 조합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 육아와 돌봄을 개인에게 떠맡기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봄 정책은 저출산 대책뿐 아니라 여성 정책, 일자리 정책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돌봄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는 늘봄학교 시행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늘봄학교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예산 충원, 인력 충원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현장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고, 방과 후 강사들은 처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업과의 연계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늘봄학교 시행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몇 개월간의 늘봄학교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일하며 현장에서 여러 문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의원이 되면서도 학교 현장의 문제를 노동조합과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에 함께하고, 늘봄학교가 제대로 된 돌봄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발제

“
**학령인구 감소 시대,
초등교육·돌봄 정책의 방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적 교육·돌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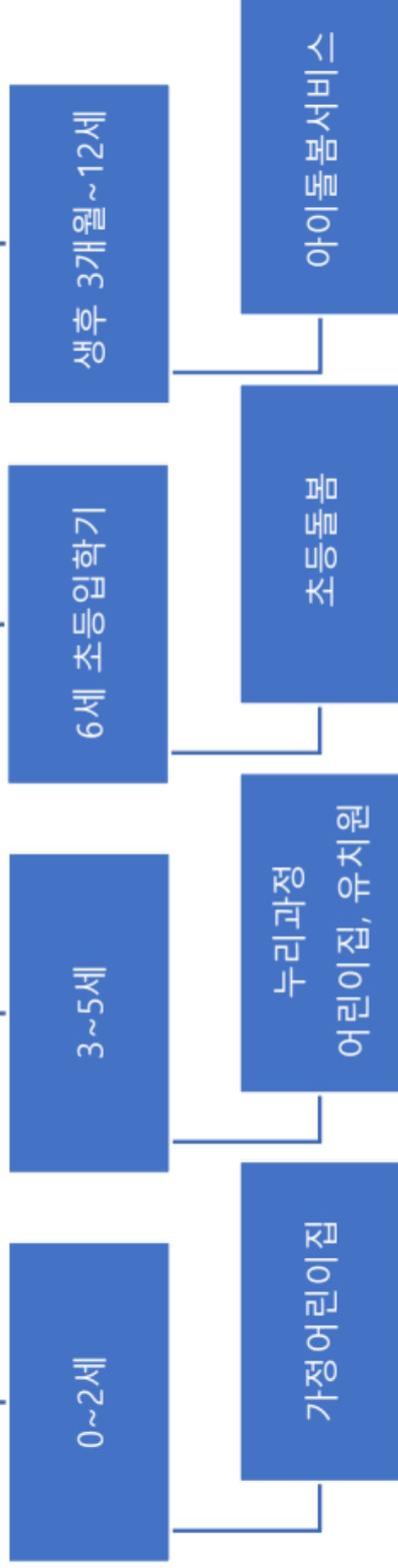
부모의 일·가정양립과 아동복지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돌봄체계는 영유아기와 초등학교기에 나누어져 구성된다. 아이가 만3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정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 3~5세 아이를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다. 6세가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있다.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기에 걸쳐 아이돌봄기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있다.

영유아기 아동돌봄체계는 상당한 규모로 커졌다. 초등돌봄체계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초등돌봄절벽** 담론이 존재할 정도다. 방과후학교의 효과나 참여도도 한정적이다. 사회적 교육·돌봄체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늘봄학교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 시작한 영유아기 돌봄과 교육의 융합으로서 누리과정에 이어서 초등학교기 돌봄과 교육의 융합으로서 늘봄학교를 구축하게 되면, 영유아기에서 초등기에 이르는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교육·돌봄체계
= 영유아기 + 초등학교기

돌봄과 교육의 융합으로서 사회적 돌봄체계
= 누리과정(유보통합) + 늘봄학교

20



초등돌봄교실 참여 현황

초등돌봄교실 참여 규모는 크지 않다. 2022년 현재 약 30만 명 수준이다. 공급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여를 꺼리는 부모와 아동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안으로서 사교육 시장의 역할도 있다. 향후 **초등돌봄교실을 늘봄학교가 대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올해 첫발을 내딛는 214개의 늘봄학교, 3월부터 운영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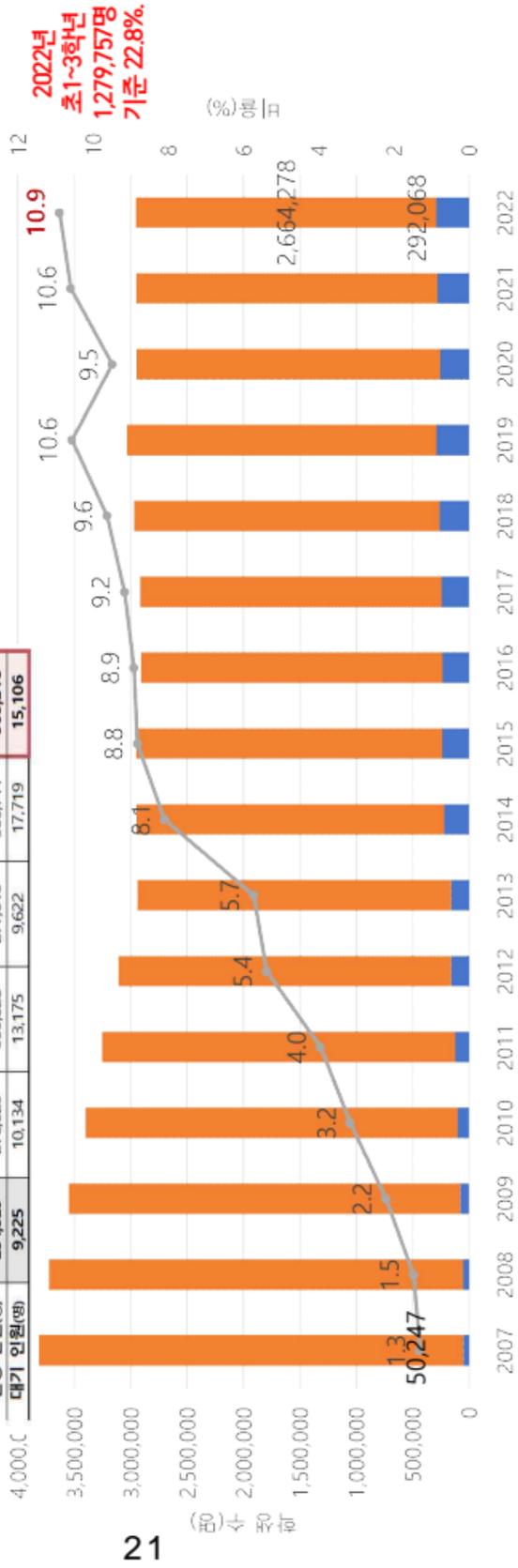
- 5개 지역 214개교

- 디지털. 에체능 방과후 프로그램, 아침. 틈새. 저녁 돌봄 운영 확대

※ 학년별 돌봄 참여 비율 : 1~2학년 83.1% / 3~6학년 16.9%

<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이용 현황('17~'22) >

항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돌봄교실 수(산)		11,980	12,398	13,910	14,278	14,774	14,970
이용 인원(명)		245,303	261,287	290,358	256,213	283,818	292,068
신청 인원(명)		254,529	276,029	309,828	277,513	300,711	305,218
대기 인원(명)		9,225	10,134	13,175	9,622	17,719	15,106



2022년 초1~3학년 1,279,757명 기준 22.8%.

늘봄학교 확대 과정

1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 '24년 초등 1학년부터 '누구나 이용' 학년 연차별 확대
 - * '누구나 이용' 대상 : ('24년) 초1 → ('25년) 초1~2 → ('26년) 모든 초등학생
 - * '24~'25년, 다른 학년에게는 기존의 방과후·돌봄 제공

연차별 집중지원 대상 확대

	'24년(본격도입)	'25년(고도화)	'26년(완성)
집중지원 대상	초1	초1~2	모든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희망 초1 100%	희망 초1~2 100%	희망 초1~6 100%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초1 희망자	초1~2 희망자**	초1~2 희망자

* '24~'25년, 집중지원 대상이 아닌 학년에게도 기존 방과후·돌봄에 참여했던 수준을 보장

** 초3 이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여부는 초1~2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 후 검토('25년)

돌봄, 방과후, 늘봄에서 늘봄으로

'24년부터 초등 방과후·돌봄 이증체제 통합·개선 → 늘봄학교 단일체제로 전환

< 이증체제 >

초등 방과후
초등 돌봄

통합·개선



< 단일체제 >



*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은 없어지고,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만 존재

초등돌봄정책의 지향점 초등돌봄체계의 확립과 부모의 일·가정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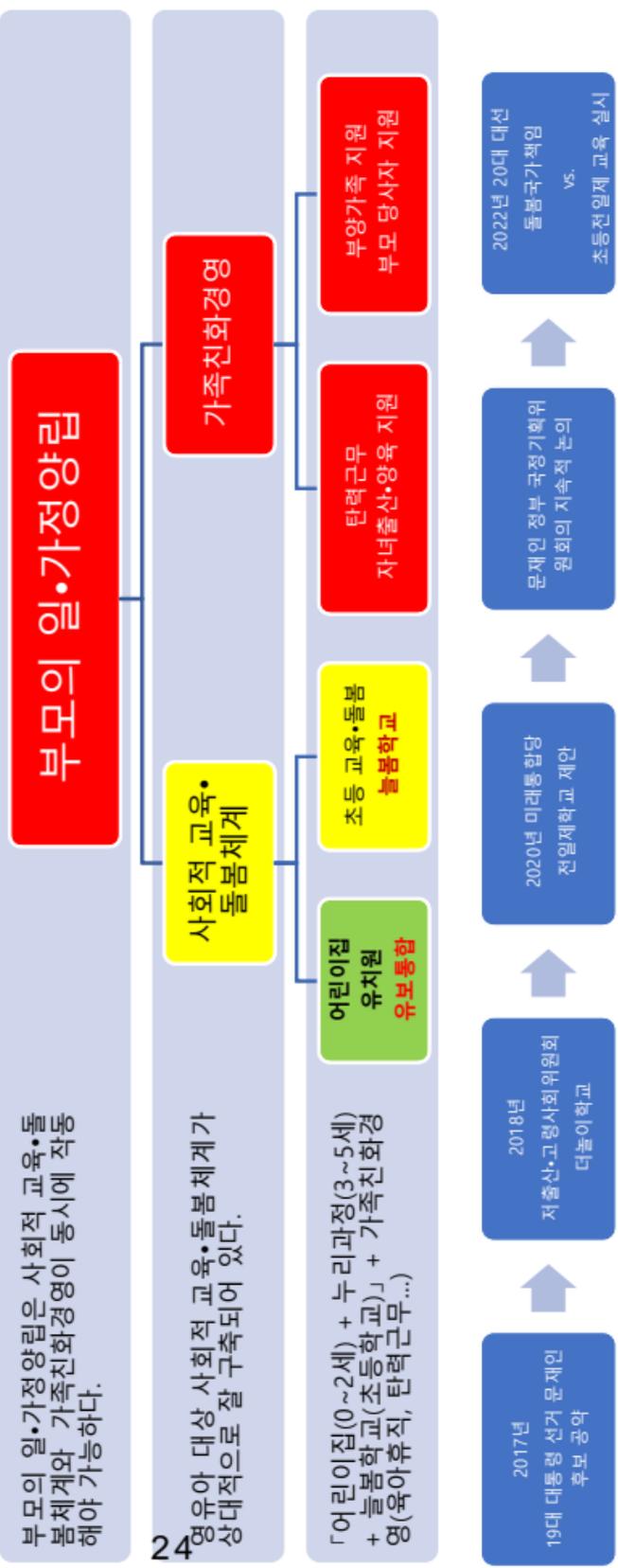
- 사회적 교육·돌봄체계의 확립과 부모의 일·가정양립

사회적 돌봄체계로서 영유아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느 정도 완성을 보았다. 그러나 **초등 교육·돌봄**이 아직 미완성 단계이다. 따라서 부모의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 여전히 한국사회에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가족친화경영도 체감도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걸음마 단계이다. 초등 교육·돌봄 확대를 완성하기 위하여 '늘봄학교'가 등장하였다. 초등 교육·돌봄의 중심이 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실천만이 남았을 뿐이다.

늘봄학교는 정지진영을 조율하여 확대를 시도해온 초등 교육·돌봄 확대의 이름 중 하나이다. 초등 온종일돌봄, 더놀이학교, 전일제학교 등 제안을 거쳐 이제 늘봄학교로서 도입 및 확대를 앞두고 있다.

부모의 일·가정양립은 사회적 교육·돌봄체계와 가족친화경영이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하다.

24명유아 대상 사회적 교육·돌봄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공약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더놀이학교

2020년 미래통합당
전일제학교 제안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
원회의 지속적 논의

2022년 20대 대선
돌봄국가책임 vs.
초등전일제 교육 실시

늘봄학교가 주는 기대효과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통합(= 아이행복의 실현)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부모의 인적자본 수준 향상

지역사회 소멸 방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교육인력 수급의 안정적 보장 + (교육)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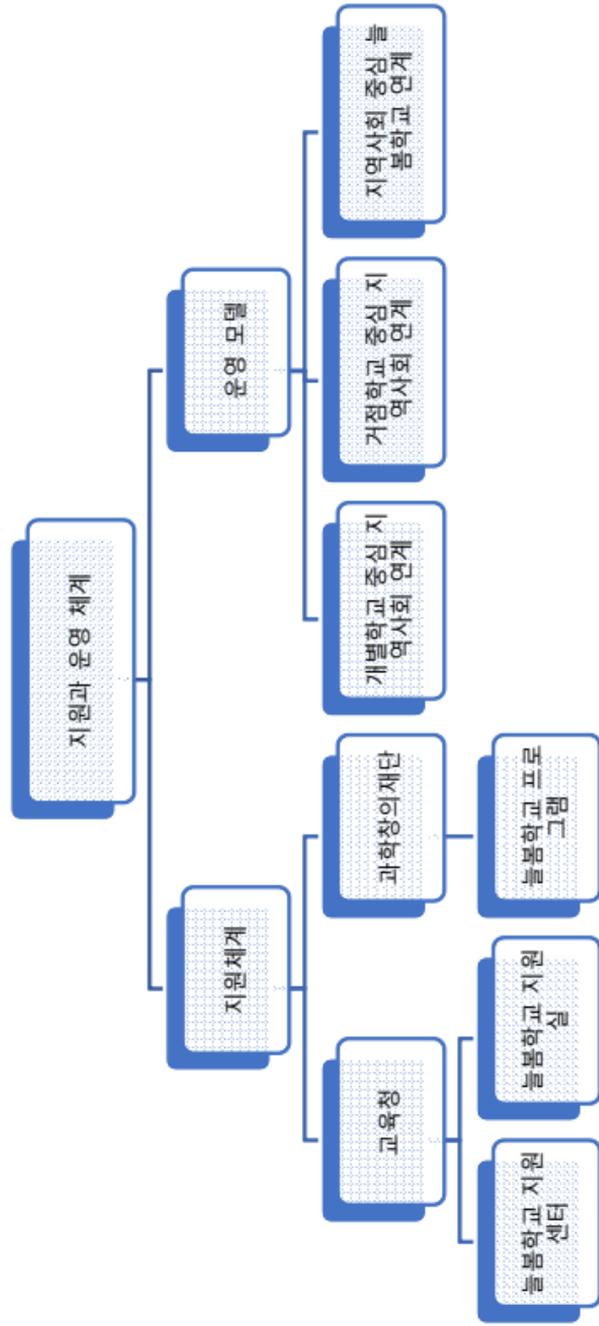
초저출산·초저출생 현상의 반전

늘봄학교 지원과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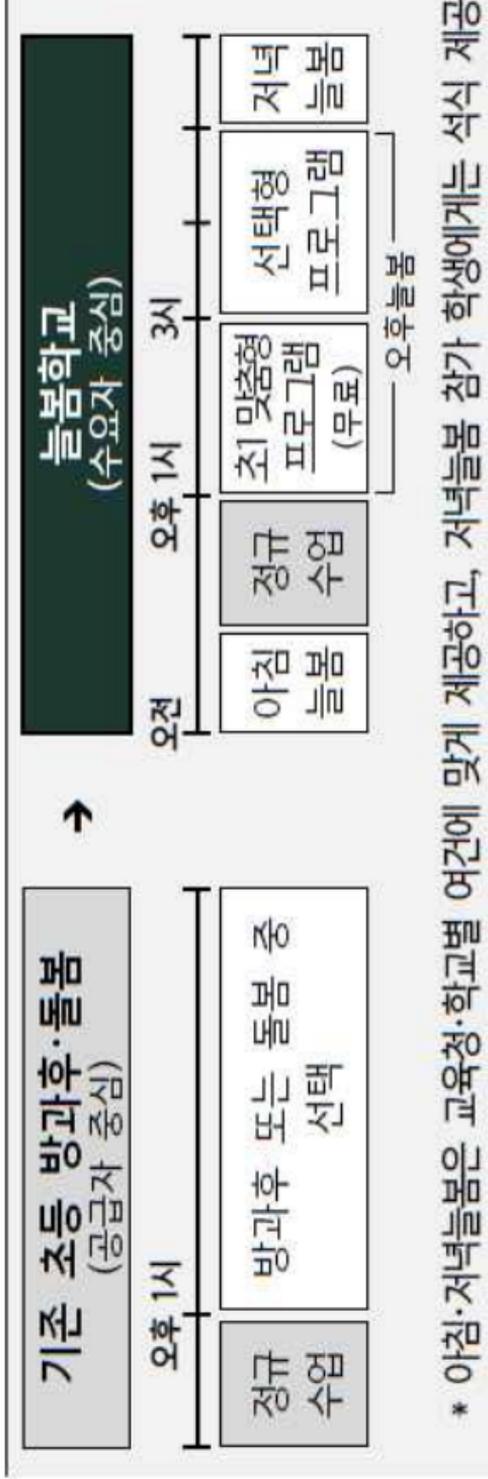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늘봄학교 도입은 의미가 없다. 부담만 잔뜩 짊어진 교사와 돌봄전담사가 지속가능하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늘봄학교 운영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해야 한다.

지역 상황에 따른 운영 모델을 유형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 산하 늘봄학교 지원센터는 오로지 늘봄학교 지원 업무만을 해야 한다. 학교 내 설치하는 늘봄학교 지원실 업무가 교사의 교육 활동과 섞여서는 안된다. 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늘봄허브'를 통해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늘봄학교의 조속한 정착과 확대를 위하여 가칭 '늘봄학교 지원특별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늘봄학교 확대가 지속되어야 한다.



늘봄학교로의 재편



늘봄학교 확대 공감대 형성 전략으로서 역할 분담 체계

늘봄학교는 새로운 변화다. 교육을 하는 돌봄, 돌봄을 하는 교육이라는 낯선 개념을 실천하는 변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미 교사는 학습지도를 하고 돌봄전담사는 돌보며, 방과후강사는 교과 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고유의 역할을 해왔다.

늘봄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이들 주체가 해왔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지원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변화다. 교사의 학습지도, 돌봄전담사의 돌봄, 방과후강사의 프로그램 진행이 아이들에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주는지를 향후 면밀히 분석한다면 교육과 돌봄, 돌봄과 교육의 융합서비스의 실체를 더욱 뚜렷이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돌봄은 자원자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다. 전문가로서 돌봄전담사(→늘봄전담사)가 학교 내 돌봄을 자원봉사자에 내주어서는 안된다.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가 최우 개선으로 이어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늘봄학교 역할 분담 체계

28



아이들의 입장에서 시작하는 교육과 돌봄

전인격적 성장의 공간

늘봄 배우처를 통한 다양한 기회 활용

일자리 창출

“

늘봄학교 24년 1학기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

강은희 진보정책연구원 기획자문위원,
(전)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

순서

1. 들뜸학교 추진 경과
2. 최신 들뜸 모델 현황
3. 들뜸학교 운영 현황
4. 개선방안

I. 늘봄학교 추진 경과

□ 도입



▲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과제 중 초등전일제 교육을 제시함

▲ 2023년 1월 9일 교육부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 발표

: 2023년 늘봄학교 시범운영과 단계적 확산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진

방안 수립

2024 아동분야 주요통계



1 [국제] 합계출산율(OECD, 2021년)



출처: Fertility rates, OECD Family Database(OECD, 2024.2. 추출), 인구동향조사(통계청, 2023, 2024.3. 추출)

구분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2019	2020	2021
학교급	초등	47.4	45
	중등	54.6	53.6
	고등	49.9	50.7

출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통계청, 2024.1.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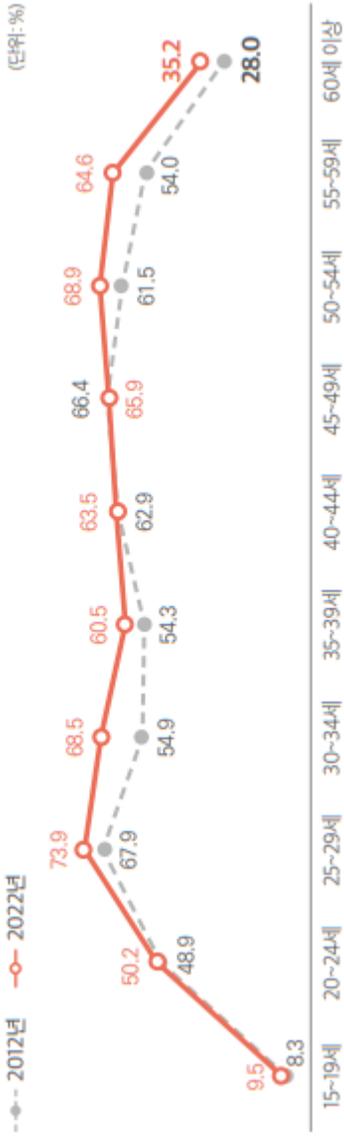
주: 해당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100%에서 제외한 비율로, 해당 비율은 각 방임 관련 항목에 대해 '한 번 이상'이라도 경험한 비율을 의미함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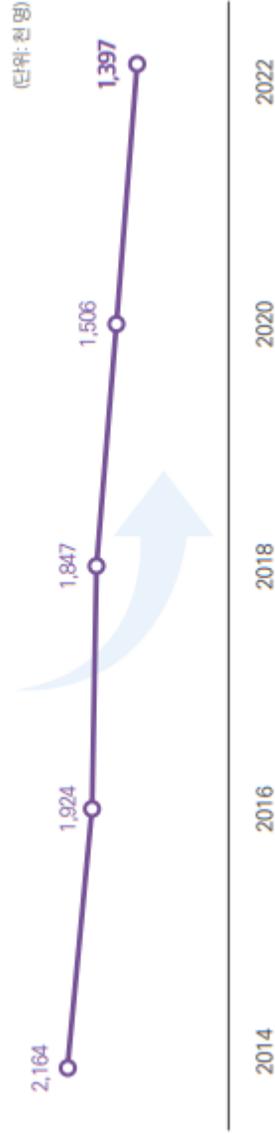
여성 경제 활동 백서

2023.12.

연령별 여성 고용률 M자형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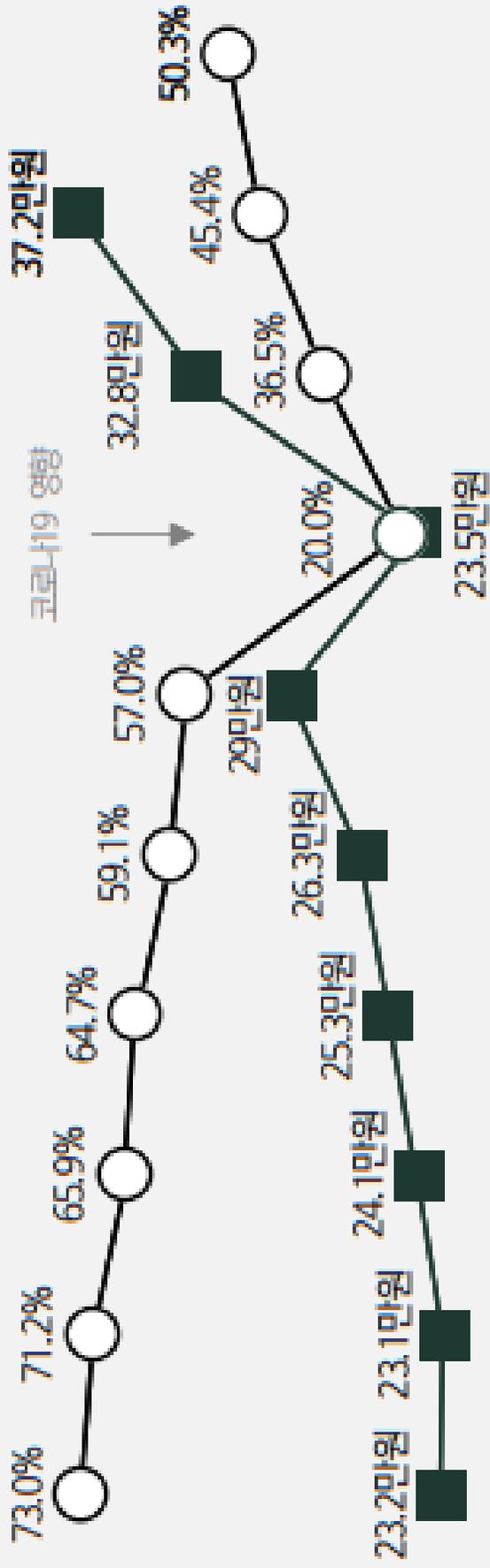


경력단절 여성 규모 감소



'14~'23년, 방과후 참여율과 사교육비(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변화 <교육부, 통계청>

○ 방과후 참여율 ■ 사교육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 '22년 총 사교육비 26조원(초 11.9조원, 중 7.1조원, 고 7.0조원)

□ 추진 방안

늘봄학교란?

(23년 1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2

- ▲ 저학년에게는 돌봄,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등 수요에 따른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 ▲ 고학년에게는 AI, 코딩 등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틈새 돌봄을 강화할 예정
- ▲ 특별교부금과 민간기부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매년 5개소씩 거점형 돌봄기관 신축

□ 추진계획(23년 1학기 발표)

▲ 2023년 5개 시도교육청에 600억원을 투입해 시범 운영하고 다양한 돌봄학교 운영 모델 발굴

2024년 시범교육청 7~8개로 확대

2025년 전국 확대

▲ 시범운영

: 2023년 5개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5개 지역 시범운영 선정

: 특별교부금 600억원 투입

: 200개 학교 대상 초 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요에 따라

20시까지 돌봄 운영시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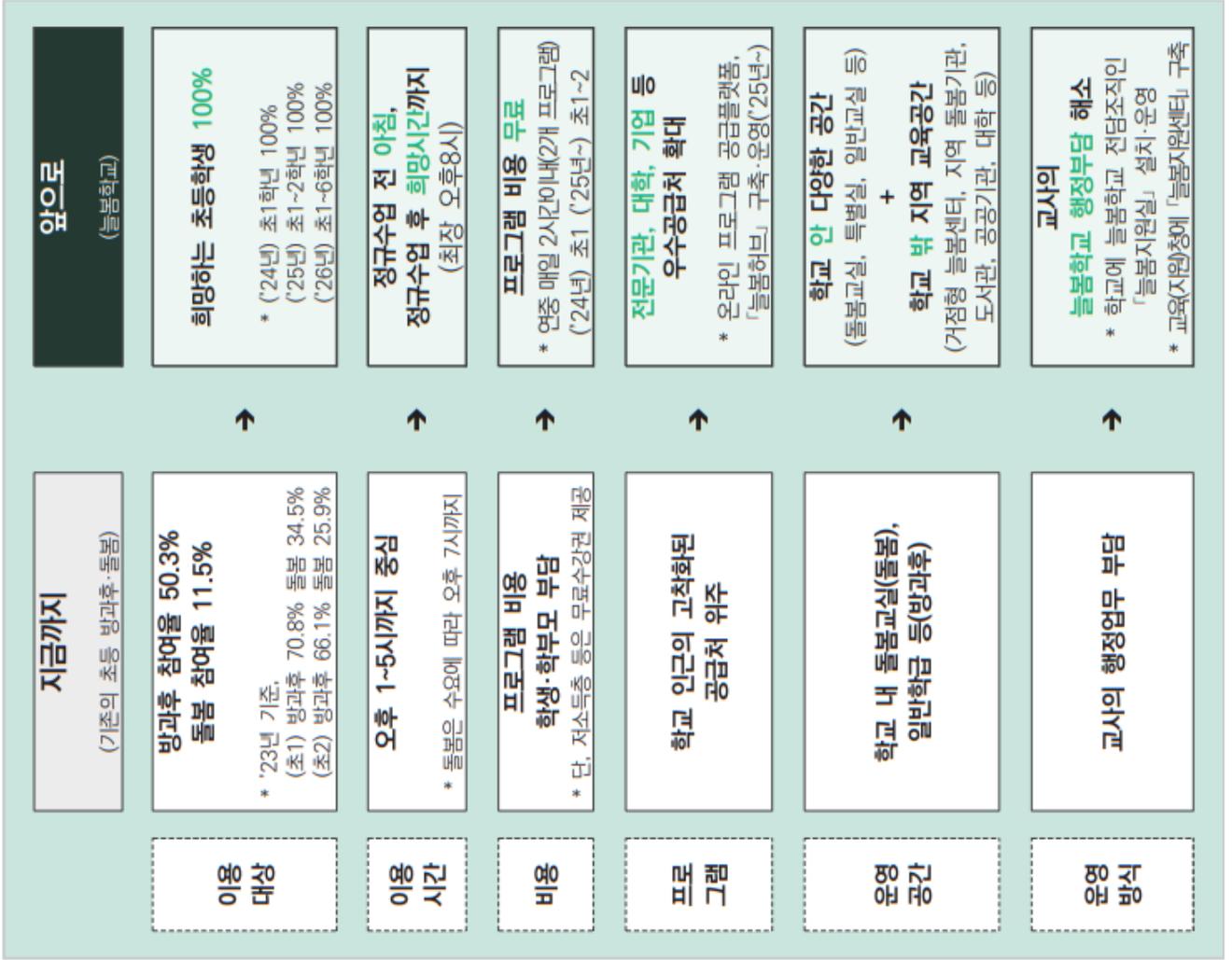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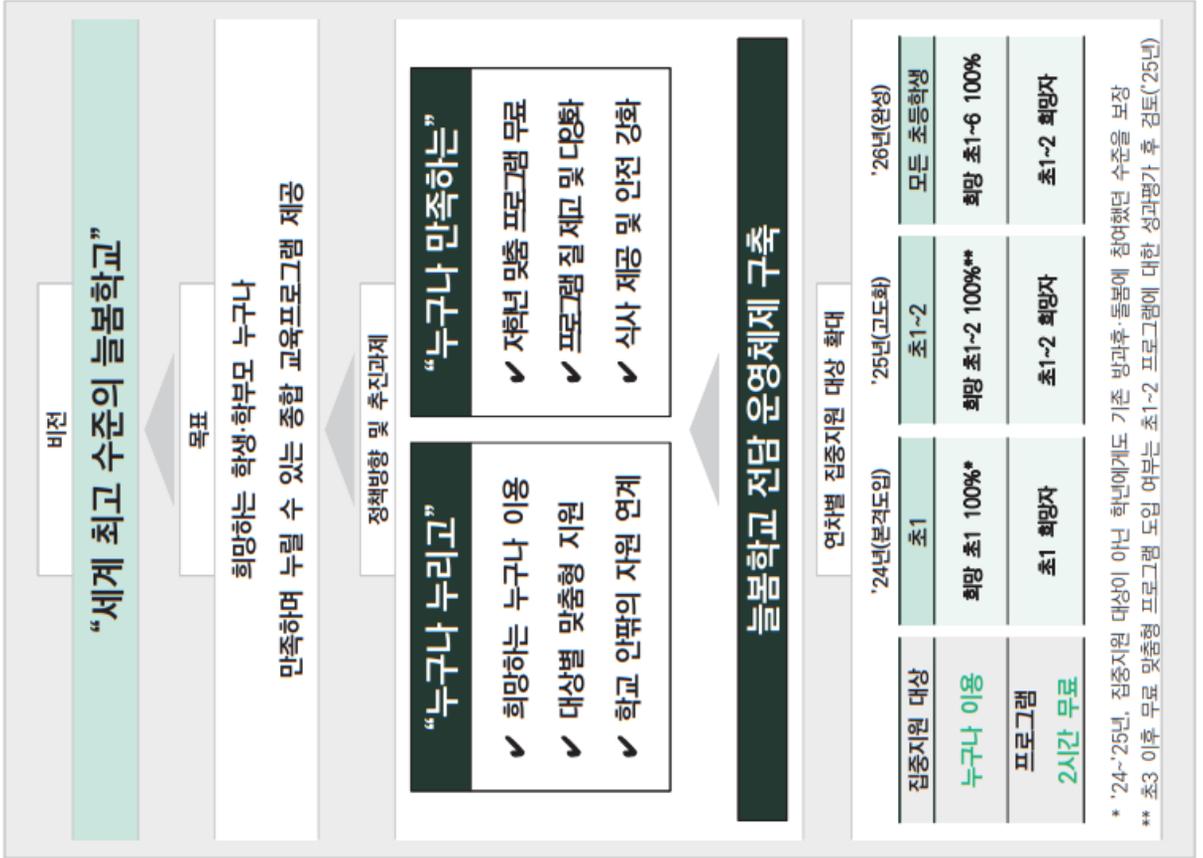
□ 23년 2학기 추진계획

- ▲ 2023년 2학기 2배 이상 확대
교육청 5개->8개, 학교수 214개교->459개교
- ▲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 ▲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 ▲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탄력적 돌봄 제공
- ▲ 돌봄대기 해소

□ 23년 추진 현황

구분	학교수	
	1학기	2학기
인천교육청	30	30
대전교육청	20	20
경기교육청	80	228
전남교육청	43	57
경북교육청	41	41
부산교육청	미운영	50
충북교육청	미운영	42
충남교육청	미운영	72

□ 향후 계획 (2024년 2월)



II. 초등돌봄봄 현황

1. 공적돌봄봄 현황

구분	학교돌봄		마을돌봄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운영방식	학교 직영	지자체 직영 및 위탁	지자체 직영 및 위탁	지자체 직영 및 위탁, 법인 및 개인운영
대상	초등1-6학년	초등1-6학년	초등1-6학년	18세 이하 아동
주요 서비스	상시돌봄 급간식 제공	상시돌봄 일시돌봄 틈새돌봄 급간식 제공	상시돌봄 일시돌봄 틈새돌봄 급간식 제공	보호활동 교육활동 문화활동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종사자 기준	1교당 전일제 전담사 1명, 추가 1실당 전담사 1명 배치	센터장, 1실당 전담사 1명 배치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하되, 이용아동수와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교사 추가 배치 (상시돌봄 20명 기준 교사1명)	운영유형/반수에 따라 인력배치 -기본지원형 1개반 팀장 1명, 담임 1명 -인원축소형 팀장 1명 -주말형 담당자 1명 이상

자료: 이혜숙 이영주(2021). 「지자체 학교 협력 돌봄사업의 서울시 운영 전략, 서울연구원.

2. 관련 법령

구분	학교돌봄		마을돌봄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관련법령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제54조~57 「청소년기본법」 제48조2

▲ 공적돌봄 유형 중 가장 이용율이 많은 초등돌봄교실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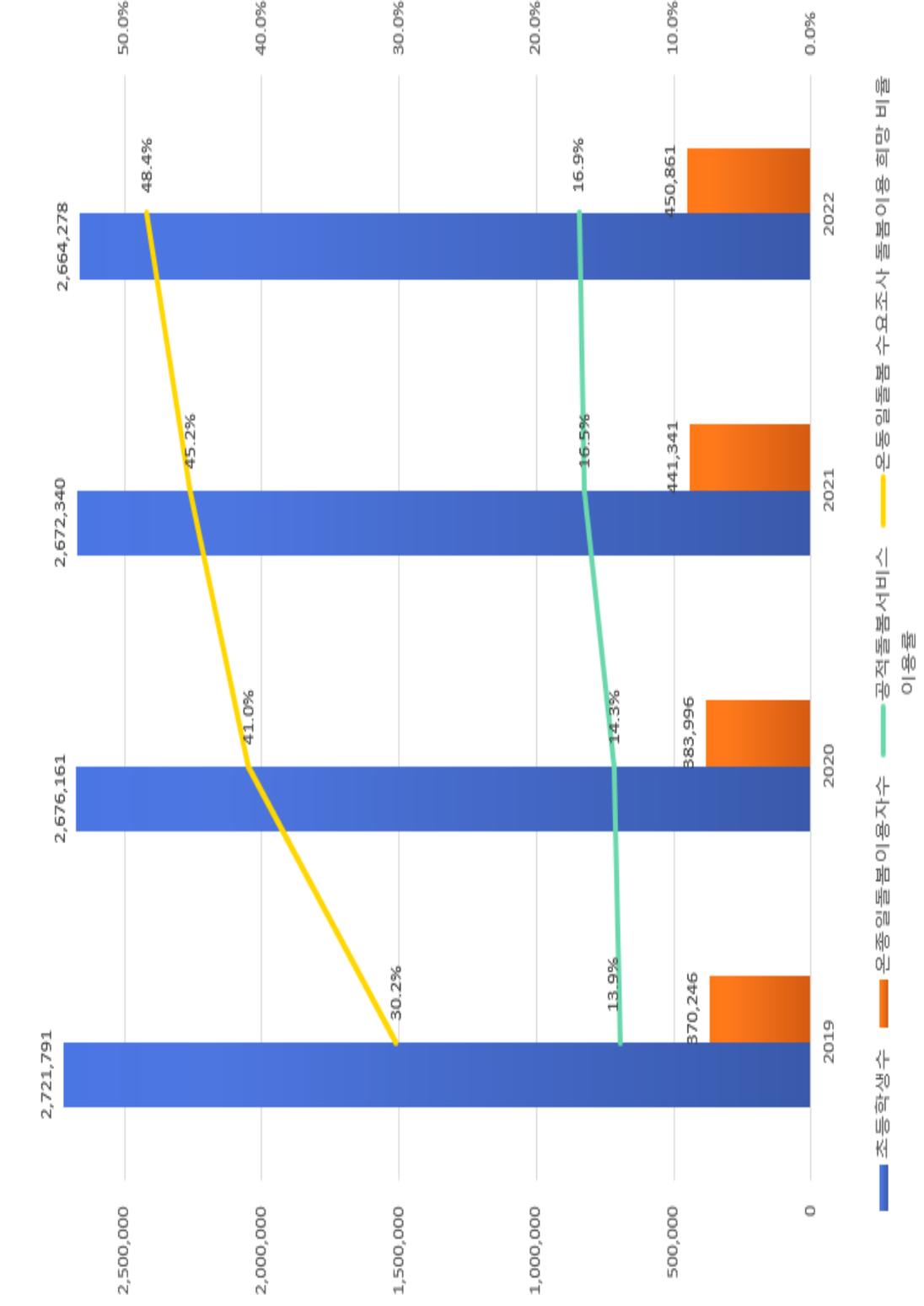
▲ 정부는 늘봄학교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24년 하반기에 (가칭) 늘봄학교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3. 온종일돌봄 이용현황과 공적돌봄서비스충족률

연도	초등학생수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초등학생)	학교돌봄터	계	공적돌봄서비스충족률(%)
2019	2,721,791	290,358	121,312	173	5,715	0	370,246	13.9%
2020	2,676,161	285,560	121,201	8,158	6,210	0	383,996	14.3%
2021	2,672,340	295,480	125,585	12,629	6,585	1,062	441,341	16.5%
2022	2,664,278	299,400	105,210	19,018	6,985	1,528	450,861	16.9%
2023	2,603,929	299,552		25,637				
19년-2 2, 23년 증감	-117,862	+9,194	+2,618	+25,464	+1,270	+1,528	+80,615	+3%

출처 : 강성희 의원실 2023.11 교육부 제공자료, 아동권리보장원 자료 재구성

□ 온종일돌봄 수요와 공적돌봄서비스충족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학생수 대비 공적돌봄충족률은 증가하고 있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학생 수는 57,513명이 줄었으나 공적돌봄이용자수는 모든 유형에서 늘어남.

▲2019년~2022년에 예비초등학생부터 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종일돌봄수요조사에 따르면 온종일돌봄이용 희망비율이 2019년 30.2%, 2020년 41.0%, 2021년 45.2%, 2022년 48.4%, 2023년 49.5%로 공적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4. 초등돌봄 수요조사

□ 23년 온종일돌봄 수요 조사 결과 (돌봄이용 희망 49.5%)

▲ 돌봄 이용 희망기관

구분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비율(%)	81.4	36.7	13.7	16.2	13.6

▲ 돌봄 이용 희망시간

구분	7시~ 8시	8시~ 수업전	수업후~ 15시	15시~ 16시	16시~ 17시	17시~ 18시	18시~ 19시	19시~ 20시	20시~ 21시	필요없 음
비율(%)	4.9	13.4	63.4	51.5	44.4	31.8	17.1	5.0	1.8	7.0

출처 : 강성희 의원실, 2023.9 교육부 제공자료 기초하여 자체 작성

□ 23년 온종일돌봄 방학중 수요 조사 결과 (학년별, 시간대별 조사)

구분	구분상세	오전7시-9시	오전9시-12시	12시-오후3시	오후3시-4시	오후4시-5시	오후5시-6시	오후6시-7시
전체	전체	13.6	76	74.2	49.9	39	26.9	14.4
학생별	신입생	16.7	74.4	68.3	47.2	38	27.2	13.8
학생별	재학생	13.1	76.3	75.1	50.4	39.1	26.9	14.5
학년별	1학년	16.8	80.4	79.6	56.8	42.5	26.8	13.7
학년별	2학년	15.4	80.4	77.8	51.4	37.9	24.9	13
학년별	3학년	11.8	76.1	73	45.9	36.8	27.2	15.3
학년별	4학년	8.7	70.5	69.3	43.5	36.4	27.4	16.2
학년별	5학년	6.2	64.1	68.6	47.8	40.8	30.5	16.5

▲ 2014년부터 방과후돌봄 범정부 수요조사 실시

▲ 2020년부터 매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예비1학년~5학년까지 실시

□ 24년 초 1 예비학부모 대상 늘봄학교 수요조사 결과

'24년 교육부 주관, 초1 예비학부모 대상 늘봄학교 관련 전수조사 개요

- (목적) 2024년 늘봄학교 운영 준비에 참고할 기초데이터 수집·이용
- (대상) 2024학년도 초등1학년 입학예정 학생(약34만명)의 학부모 1명
- (기간) 2024.1.1.(월) ~ 2024.1.8.(월) (7일간)
- (방법) 온라인 조사

▲ 24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미 실시

- 1학년만 대상으로 실시
 -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만 조사
 - 학년별, 기관별 수요 파악 불가
- ## ▲ 초1맞춤형+방과후돌봄 희망 81%
- 초 1맞춤형 프로그램만 희망 11.7%

□ 응답자 현황

- '24년 초1 예비학부모 (1인) 약 34만명 중 52,655명 참여(15.4%)

□ 주요 조사결과

- (참여희망) 전체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희망 (44,035명)
 - 그 외 응답으로는 가정돌봄 (8.0%), 학원수강 (6.4%), 기타 (1.2%), 친지돌봄 (0.8%) 순
- (희망시간) 정규수업 이후 ~오후4시 (29.8%) > ~오후3시 (25.4%) > ~오후5시 (19.5%) > ~오후2시 (11.6%) > ~오후8시 (1.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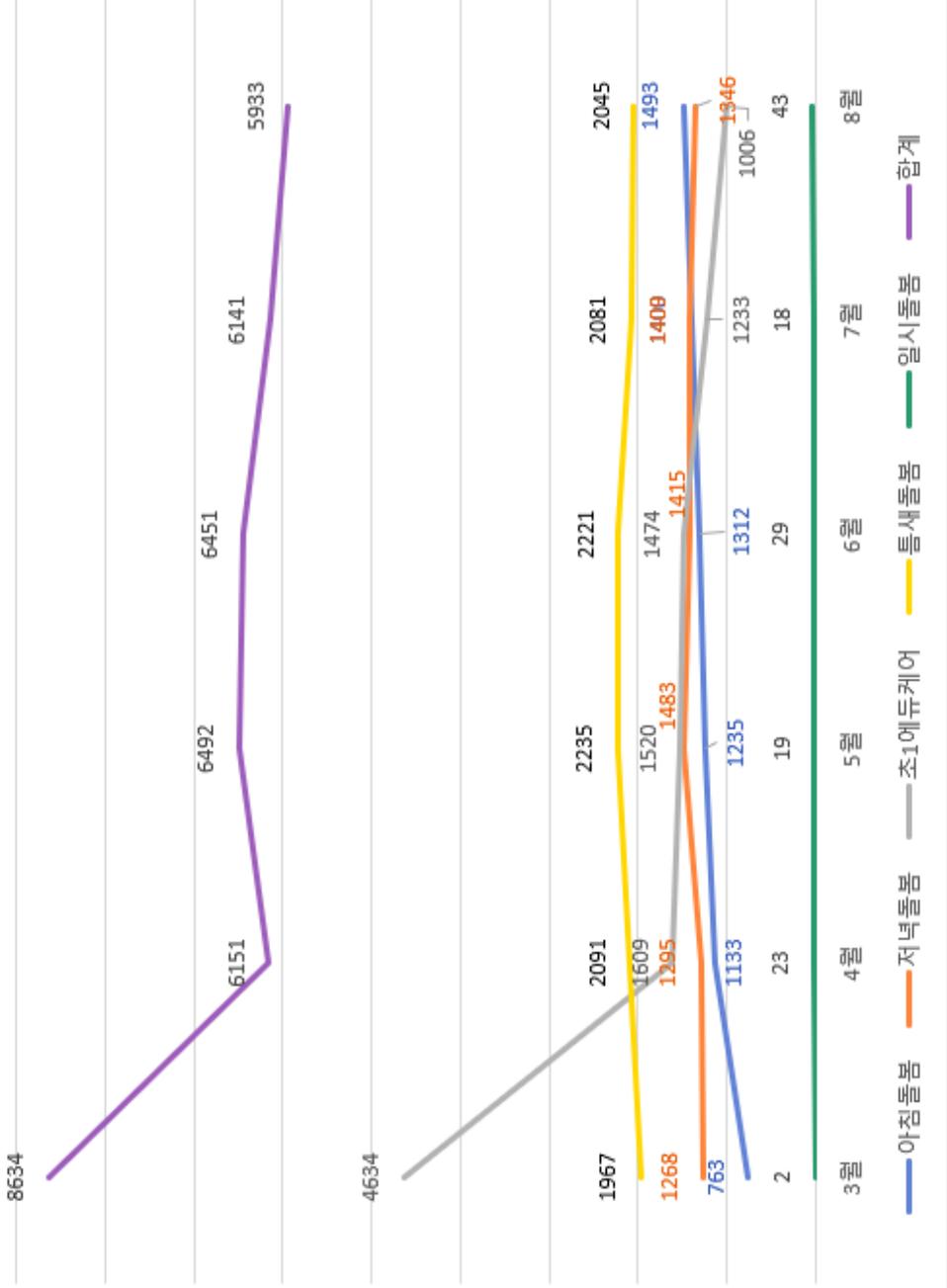
늘봄학교 참여 희망시간

구분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계
응답자(명)	5,124	11,180	13,122	8,592	3,850	1,658	509	44,035
비율(%)	11.6	25.4	29.8	19.5	8.7	3.8	1.2	100

- (희망활동) 초1 맞춤형 프로그램+선택 (방과후,돌봄)(81.0%) > 초1 맞춤형 프로그램만(11.7%) > 방과후 프로그램만(5.1%) > 돌봄만(2.1%) 순

Ⅲ. 늘봄학교 운영 현황

1. 23년 1학기 시범운영 5개 교육청 유형별 이용자 현황



▲ 23년 1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5개 교육청의 유형별, 월별 이용아동수는 초1 에듀케어 이용자가 많은 3월에 8,634명이었으나 이용인원이 갈수록 감소.

출처 : 강성희 의원실, 2023.9 교육부 제공자료 기초하여 자체 작성

2. 24년 1학기 초 1 맞 춤형 이용현황

□ 이용자수

▲ 2024년 늘봄운영학교는 6302개 중 2963개로 47%이며 이용학생은 1학년 학생 34만 7천 950명 중 127,944명임. (전남과 충북은 돌봄교실 이용인원을 늘봄 이용인원으로 집계)

48

구분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학교 수	이용자수
경기교육청	975	67791
경남교육청	159	5765
경북교육청	180	5235
광주교육청	45	412
대구교육청	70	2422
대전교육청	45	1802
부산교육청	304	8184
서울교육청	150	3890
세종교육청	25	956
울산교육청	24	472
인천교육청	60	1570
전남교육청	425	12321
전북교육청	143	3663
제주교육청	55	2260
충남교육청	119	1623
충북교육청	100	4081
강원교육청	84	5497
합계	2963	127944

출처 : 정혜경의원실, 24년 6월

교육부 제공자료

□ 프로그램

□ 00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예시]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차시 40분, 10분 휴식)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12:00	정규수업				
12:00~13:10	점심시간 및 자유놀이·휴식				
13:10~13:50	놀이음악	놀이한글	방승댄스	놀이체육	놀이미술
13:50~14:00	쉬과 휴식				
14:00~14:40	놀이체육	마음일기	놀이수학	음악줄넘기	놀이과학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13:10	정규수업 → 점심시간 및 자유놀이·휴식				
13:10~13:50	놀이음악	정규수업	창의·수학	정규수업	독서토론
13:50~14:00	쉬과 휴식				
14:00~14:40	놀이체육	창의과학	인성·독서	마음일기	창의미술
14:40~14:50	쉬과 휴식				
14:50~15:30	늘봄과정 (돌봄)	놀이한글	늘봄과정 (프로그램)	놀이체육	늘봄과정 (돌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하교후 ~13:40	보살핌활동(손 소독, 소지품 정리), 선행활동-독서, 개인활동				
13:40~15:20 단체활동 (특기적성) 간식 지도	특기적성 (스포츠타일링)	특기적성 (신체활동)	특기적성 (화려한)	특기적성 (공의미술)	특별활동(놀이) (영양수업)
	13:40~14:30 14:30~15:20	14:20~15:10 15:10~16:00	13:40~14:30 14:30~15:20	13:40~14:30 14:30~15:20	13:40~14:30 14:30~15:20
15:20~16:00 (요일별활동)	즐거움 간식시간(30초 쏘꿏기, 자기자리 소독, 말하지 않기)				
16:00~16:30 (인성교육)	안전교육	창작활동	창의활동	독후활동	공예활동
16:30~17:00 (자유선택활동)	기본생활습관, 시청각교육, 동시낭송				
17:00~19:00 (보살핌활동)	개별활동(퍼즐, 레고 등)독서활동, 개별 귀가지도				
	스스로 독서하기 및 자유놀이활동, 정리정돈 및 개별 귀가지도				

- ▲ 초 1 맞춤형은 2개 프로그램 무상 제공 VS 돌봄교실은 1개 프로그램 무상 제공
- ▲ 초 1 맞춤형 15:30 종료, 돌봄교실 19:00 종료

□ 00초등학교 21년 방과후학교 안내

□ 늘봄학교 초1 프로그램 강사

-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초1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 예·체능, 사회·정서 등 프로그램을 학교여건에 맞게 제공
- 지역대학 중심의 사업단("24년, 33개)을 공모하여, 질 높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제공("24.2~7월)
- 학생·학부모 수요가 높은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 △환경 분야 집중개발·제공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분야

체육	운동과 체력,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한 활동, 스포츠 유형과 표현 등
문화·예술	음악 연주와 감상, 미적 체험과 표현, 문예 창작, 연극, 영화·사진 등
사회·정서	사회와 언어, 건강과 안전, 명상, 마음알기 등
창의·과학	AI·디지털, 기술과 생활, 지구와 우주, 과학과 사회, 수학적 사고 등
기후·환경	생태, 기후위기, 기후행동,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등

▲ 늘봄 초1 프로그램과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없음에도 기존 방과후학교 강사 대신

지역대학 사업단에게 프로그램 강사를 맡겨야 하는지..

순	월수 1교시 (14:50~15:50)	화목 1교시 (14:50~15:50)	금요 1교시 (13:00~14:30)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1	바이올린(1.5 맞춤형수업)	바이올린(1.5 맞춤형수업)	바이올린 (1.5 맞춤형수업)
2	첼로(1.5 맞춤형수업)	첼로(1.5 맞춤형수업)	첼로(1.5 맞춤형수업)
3	플루트(1.5 맞춤형수업)	플루트(1.5 맞춤형수업)	창의미술공작소
4	창의 미술	아트 앤 디자인	컴퓨터와 코딩
5	컴퓨터는 내 친구	수영 (1.8 맞춤형 수업)	생활체육교실
6	수영 (1.8 맞춤형 수업)	동심(인고)보수(표현하는) 창의독서 토론논술	수영스피셜 (1.5 맞춤형수업)
7	축구	컴퓨터는 내 친구	
8	태권도	배드민턴	
9		누리 오케스트라 오디션 통과자 3-4학년(매) / 5-6학년(목)	
순	월수 2교시 (16:00~17:00)	화목 2교시 (16:00~17:00)	금요 2교시 (14:40~16:10)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1	수영스피셜 (1.5 맞춤형수업)	수영스피셜 (1.5 맞춤형수업)	바이올린 (1.5 맞춤형수업)
2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	첼로(1.5 맞춤형수업)
3	드로잉 앤 컬러링	드로잉 앤 컬러링	수채화마스터클래스
4	컴퓨터와 코딩	편집아트	디자인
5		컴퓨터와 코딩	탁구
6			배드민턴
7			수영스피셜 (1.5 맞춤형수업)

3. 운영시간, 운영인력

▲ 희망 이용시간 미충족

- 8개 (강원, 충북 확인 필요) 교육청이 4시 이전까지 운영

▲ 기간제, 자원봉사자 등 불안정한 인력으로 운영

출처 : 정혜경 의원실, 2024.6 / 교육부 제공자료
기초하여 자체 작성

구분	운영시간	운영인력
경기 교육청	방과후~2시간	지역인력 175명, 자원봉사자 263명, 교원 211명, 기간제돌봄인력 9명
경남 교육청	13:10~14:40	자원봉사자 85명, 교원 4명, 기간제돌봄인력 17명
경북 교육청	13:00~15:00, , 16:00	자원봉사자 103명, 기간제교원 180명
광주 교육청	13:00~15:00,16:00,17:00	늘봄실무사 43명
대구 교육청	13:00~16:00, 17:00,18:00	교원 19명, 기간제 인력 70명
대전 교육청	13:00~14:40	기간제 교육공무직
부산 교육청	13:00~15:30	자원봉사자 368명, 교원 149명, 기간제돌봄인력 49명, 늘봄실무사 152명
서울 교육청	13:30~15:30	자원봉사자 152명, 교원 4명, 기간제 돌봄인력 151명, 기관위탁(서울중구형) 54
세종 교육청	방과후~17:00	늘봄실무사 채용계획 없음. 늘봄지원실장
울산 교육청	13:00~15:50,16:00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인천 교육청	13:00~14:30, 15:20, 16:00	자원봉사자 67명
전남 교육청	13:00~17:00	기간제 돌봄인력 271명
전북 교육청	13:00~17:00,18:00	지역인력 27명, 자원봉사자 33명, 교원 56명
제주 교육청	13:00~15:30	자원봉사자 117명, 교원 55명
충남 교육청	방과후-15:00	자원봉사자 105명, 기간제교원 104명, 기간제 돌봄인력 19명
충북 교육청	13:00~17:00	교원 79명, 늘봄실무사(단기행정) 27명
강원 교육청	13:00~15:00	자원봉사자 38명, 교원 84명

□ 늘봄실무사 채용 계획

▲ 교육청별로 늘봄실무사 채용 기준 상이

- 교육부 차원의 기준 마련 필요

구분	24년 하반기 채용 계획
경기교육청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교사 975명, 기간제 367명(안양·과천은 기간제교사로 100% 배치)
경남교육청	채용 계획 없음.
경북교육청	486명 기간제 채용
광주교육청	시간제 전담사(4시간) 늘봄실무사 상시전일제 전환 배치
대구교육청	교육지원업무실무원 235명 기간제 채용
대전교육청	기간제 교무행정늘봄실무원 인력풀 공개 모집
부산교육청	99명 공무원 채용
서울교육청	573명 기간제 채용
세종교육청	채용 계획 없음
울산교육청	117명 기간제 채용
인천교육청	264명 기간제 채용 예정
전남교육청	300명 채용 예정이었으나 미확정
전북교육청	늘봄실무사 168명 채용(무기계약직), 방과후실무사 130여명 늘봄실무사로 전환
제주교육청	기간제 채용 예정
충남교육청	늘봄실무사 240명 채용(무기계약직)
충북교육청	늘봄실무사 120명 채용 예정(무기계약직)
강원교육청	방과후전담사+초등돌봄전담사 늘봄학교전담사로 직종 통합 및 상시전일제 전환, 100~120명 추가 채용 예정(늘봄실무사 직종 없음)

출처 : 정혜경 의원실, 2024.6 / 교육부 제공자료
기초하여 자체 작성

IV. 개선방안

1. 범정부 돌봄 수요조사 실시

- ▲ 늘봄학교의 취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음.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수요조사 전학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함.
- ▲ 공적 초등돌봄기관 전체에 대한 수요조사가 되어야 함.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이를 돌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2. 원하는 시간대와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제공

- ▲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 운영시간 통일 - 원하는 시간만큼 모두에게 돌봄 제공
- ▲ 프로그램 동일하게 제공

3. 돌봄 전담인력 확대

- ▲ 돌봄의 질은 돌보는 사람에 달려 있음. 자원봉사자, 시간제 일자리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는 없음.
- ▲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일제 돌봄전담인력을 확대해야 함.
- ▲ 늘봄실무사 등 돌봄인력은 무기계약직 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함

4. 방과후돌봄 법적 근거 마련

- ▲ 안정적 돌봄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 무상방과후학교 단계적 도입

- 사교육비 경감 및 보편적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상방과후학교 실시
- 늘봄지원센터가 방과후학교강사 인력풀 관리 및 채용

6. 돌봄(늘봄)협의체 구성

▲ 교육부 및 교육청 차원의 협의체 구성

- 돌봄종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협의 기구
- 지역별 협의체 구성

감사합니다.

토론

초등돌봄 법제화의 필요성

오민애 국민입법센터 변호사

1. 발제에서 정리해주신 바와 같이,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 아래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음.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행을 예고¹⁾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 개선하고 학교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정수업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함.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책임의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임”이라고 전제하면서 추진하였는데, 추진 과정에서 여러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음. 담당 인력, 공간, 예산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로드맵의 마련이 전제되지 않았고, 기존 방과후 업무를 전담하던 방과후전담 인력과의 최소한의 소통도 없었음. 늘봄학교가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할 것’을 전제하고 있고 ‘원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것을 표방하지만 기존의 교원,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개편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기존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존 업무를 수행하던 방과후강사, 방과후전담사의 역할을 고려하고 각 교육주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통은 없었음.²⁾

2.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늘봄학교의 법적 근거 또한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음. 공간과 인력 확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비롯한 법적 근거를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나, 지속가능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불안

1) 2024. 7. 16.자 YTN 기사 “대통령실, 늘봄학교 운영상황 점검…‘전체 학교 절반 참여’”

2) 2024. 6. 29.자 오마이뉴스 기사 “너무이른 ‘늘봄학교’ 도입,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소통부터”

2024. 2. 5.자 연합뉴스 기사 “늘봄학교 졸속 확대”... 교원단체, 학교비정규직 한목소리로 비판

정한 지위에 놓이지 않고 안정적인 늘봄학교의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함. 해당 법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또한 늘봄학교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늘봄학교가 지향하고 추구해야하는 바를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임.

3. 지난 국회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의안번호 2126239, 2100339) 임기만료로 폐기됨. 위 법률안은 ‘온종일돌봄’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온종일돌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교육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온종일 돌봄 시설의 설치기준,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관련 조례 제정의 근거 등을 담고 있음. 늘봄학교 근거 법률의 경우 늘봄학교의 구체적인 역할과 이에 따른 재정 및 인력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이에 관한 정부부처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담고, 법적 근거를 토대로 관련 주체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늘봄학교의 추진 및 도입 이전, 맞벌이 가정의 증가, 양육환경의 변화, 여성의 경력단절, 교육격차 등으로 초등학생의 방과후돌봄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학교별 방과후수업과 돌봄교실의 운영 양상이 다양하고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 않아 이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 지적되었음. 방과후수업과 돌봄서비스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 관련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전반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³⁾가 컸음.

5. 관련하여 제시한 법안⁴⁾에는 방과후수업과 돌봄의 통합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중앙 및 지역), 교육청 및 학교의 직접 운영 원칙, 관련 시설 및 인력 운영 관련 근거⁵⁾ 마련, 종사자의 처우 보장, 운영지원의 근거마련 등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둬으로써, 그동안 법적 근거나 일정한 기준 없이 교육부,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추진되고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어야 했던 초등 돌봄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담고자 하였음.

3)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초등전일제학교 도입을 위한 연구”(2022. 12.) 참조. ‘전일제학교’의 개념을 전제하였으나, 초등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하여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 종합적인 계획 마련의 필요성, 종사자들에 관한 근거 규정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초등 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법안을 함께 제시함. 늘봄학교의 운영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향과 법안 및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전일제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5) 제11조(전일제학교의 시설, 인력 및 운영 기준)

① 전일제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방과후교육·돌봄을 원활히 하고 아동과 종사자 등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방역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전일제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전항의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교육감, 교육(지원)청 및 해당지방자치단체 내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학교 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전일제학교의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한다.

1. 방과후강사
2. 돌봄전담사
3. 행정담당자

④ 교육감은 전일제학교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기준, 보수교육 이수 등 인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전일제학교 시설, 인력 및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대통령과 관련 부처의 의지만으로는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는 없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늘봄학교가 그 목표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종사자들의 처우와 업무분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늘봄학교 참여 주체들과 소통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Evaluation werden Bund und Länder unter Beachtung der Aufgabenverantwortung Mehrbelastungen und Minderbelastungen der Länder auf Grundlage der in diesem Gesetz geregelten wechselseitigen Finanzbeiträge angemessen ausgleichen.	경감 비용을 적절하게 보상한다.
Artikel 7 Inkrafttreten	제7조 시행
(1) Dieses Gesetz tritt vorbehaltlich der Absätze 2 bis 6 am Tag nach der Verkündung in Kraft.	(1) 이 법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외하고, 공포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 Artikel 1 Nummer 1 und 4 tritt am 1. Januar 2023 in Kraft.	(2) 제1조제1호와 제4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Artikel 1 Nummer 5 bis 8 tritt am 1. Juli 2022 in Kraft.	(3) 제1조제5호부터 제8호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Artikel 1 Nummer 2 und 3 tritt am 1. August 2026 in Kraft.	(4) 제1조제2호와 제3호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Artikel 2 tritt am 1. August 2029 in Kraft.	(5) 제2조는 202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Artikel 4 tritt am 1. Januar 2026 in Kraft.	(6)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Das vorstehende Gesetz wird hiermit ausgefertigt.	이에 따라 위의 법률이 발행된다.
Es ist im Bundesgesetzblatt zu verkünden.	이 법은 연방법률관보에 고시한다.

나. 법률안

전일제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맞벌이 가정의 증가, 양육환경의 변화, 여성의 경력단절, 교육격차 등으로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학교별로 방과 후 수업 및 돌봄교실의 운영 태양이 다양한 한편,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방과 후 수업(교실)의 성격 및 돌봄서비스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 또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이에 「전일제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 방과 후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에 대하여 방과 후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 교육 및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전일제학교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일제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이후(방학을 포함한다) 교육과 돌봄이 진행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를 말한다.
3. “아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방과후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6. “돌봄”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호를 말한다.
7. “방과후강사”란 전일제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돌봄전담사”란 전일제학교의 돌봄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행정담당자”란 전일제학교의 교육 및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10. “종사자”란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행정담당자 등 전일제학교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교육 및 돌봄에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일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아동과 그 보호자의 방과후교육 및 돌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일제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학교의 방과후교육 및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전일제학교의 운영 및 시행

제5조(전일제학교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전일제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정부조직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을 총괄·조정하여야 한다.

④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일제학교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일제학교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전일제학교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4. 전일제학교의 예산 지원 방안
5. 전일제학교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 방안
6. 종사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 방안
7. 그 밖에 전일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교육부장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일제학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전일제학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운영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전일제학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일제학교 중앙운영협의회57) ① 교육부장관은 전일제학교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전일제학교 중앙운영협의회(이하 “중앙운영협의회” 라고 한다)를 둔다.

- ② 중앙운영협의회는 제5조 제4항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일제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괄·조정한다.
- ③ 중앙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중앙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2. 교육청 소속 공무원
 - 3. 방과후교육 및 돌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전일제학교 종사자 대표(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행정담당자 각 대표를 포함한다)
- ⑥ 그밖에 중앙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일제학교 지역운영협의회) ① 교육감은 관할지역 내 학교의 전일제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전일제학교 지역운영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라고 한다)를 둔다.

- ② 지역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역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은 교육감으로 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 3. 방과후교육 및 돌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관할 지역 내 전일제학교의 운영자 및 종사자
 - 5. 제2조 제4호의 보호자
- ⑤ 그밖에 지역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전일제학교의 운영 등) ① 전일제학교는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아동에 대한 방과후교육 및 돌봄을 제공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교육 및 돌봄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 1. 정규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조력

57) 중앙운영협의회와 지역운영협의회의 위상, 역할에 대한 확인 필요

2.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3. 간식 및 급식 지원
 4. 특기 적성 및 역량 개발 지원
 5. 체험 및 놀이활동 지원
 6. 생활상담 등 정서적 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돌봄 활동
- ③ 전일제학교의 운영은 타 행정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없다.
- ④ 그 밖에 전일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비용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일제학교의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전일제학교의 시설, 인력 및 운영 기준) ① 전일제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방과후교육돌봄을 원활히 하고 아동과 종사자 등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방역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전일제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전항의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교육감, 교육(지원)청 및 해당지방자치단체 내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학교 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전일제학교의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한다.

1. 방과후강사
2. 돌봄전담사
3. 행정담당자

④ 교육감은 전일제학교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기준, 보수교육 이수 등 인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전일제학교 시설, 인력 및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종사자의 처우 보장) ① 전일제학교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근로관계법령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교육(지원)청은 전일제학교 종사자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지원)청은 전일제학교 종사자의 채용 및 관리를 총괄하며, 종사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지원)청은 전일제학교 종사자가 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폭행,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아동 및 보호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종사자의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일제학교의 우선 제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일제학교를 우선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7.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⁵⁸⁾

제14조(지도·감독)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일제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전일제학교의 운영에 관한 지원

제15조(전일제학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전일제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일제학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일제학교 관련 행정업무
2. 전일제학교의 운영 지원
3. 전일제학교 간의 연계 및 협력 지원
4. 전일제학교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5. 전일제학교 관련 정보의 제공, 홍보 및 교육
6. 전일제학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전일제학교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지원
8. 중앙운영협의회 및 지역운영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분석 지원

58) 학교장의 추천 등 다른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확인 필요

9. 그 밖에 전일제학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전일제학교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전일제학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1년마다 전일제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학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전일제학교 외에는 전일제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과태료) 제16조를 위반하여 전일제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조례안

전일제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일제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일제학교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일제학교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교육 및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전일제학교”란 「전일제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2. “아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방과후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5. “돌봄”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호를 말한다.
6. “방과후강사”란 전일제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돌봄전담사”란 전일제학교의 돌봄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행정담당자”란 전일제학교의 교육 및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9. “종사자”란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행정담당자 등 전일제학교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과 책무) ①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선택에 따라 전일제학교의 교육 및 돌봄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전일제학교의 방과후교육이 아동의 창의성·다양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학생들에 대한 고른 교육기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일제학교의 돌봄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전일제학교 종사자가 안정적인 지위에서 교육 및 돌봄,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전일제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전일제학교 종사자의 처우개선, 보수교육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교육감의 전일제학교 및 전일제학교 종사자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전일제학교의 운영 및 시행

제4조(전일제학교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전일제학교 관련 사업을 위해 「전일제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일제학교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전일제학교 교육 및 돌봄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일제학교 민주적 운영 및 전일제학교 종사자 지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전일제학교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일제학교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전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일제학교 지원센터의 평가 및 연구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전일제학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청의 전일제학교 사업)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산하 각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일제학교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운영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지역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협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방과후교육 및 돌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할 지역 내 전일제학교의 운영자 및 종사자, 보호자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③ 협의회는 시행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일제학교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괄조정한다.

④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일제학교 사업에 관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단위학교에서의 전일제학교 사업) ① 학교장은 전일제학교 관련 교육부 및 각급 교육청의 지침, 교육감의 시행계획 등에 따라 단위학교별 전일제학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전일제학교가 아동에게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장 전일제학교의 운영에 관한 지원

제7조(전일제학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전일제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일제학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일제학교 관련 행정업무
2. 전일제학교의 운영 지원
3. 전일제학교 간의 연계 및 협력 지원
4. 전일제학교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5. 전일제학교 관련 정보의 제공, 홍보 및 교육
6. 전일제학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전일제학교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지원
8. 중앙운영협의회 및 지역운영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분석 지원
9. 그 밖에 전일제학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위 각 호의 사항은 보호자 및 전일제학교 종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8조(전일제학교 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전일제학교 종사자에게 업무해태, 자격상실, 갱신거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5년 동안은 방과후교육, 돌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전일제학교 종사자의 지위 보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전일제학교 종사자의 임금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매년 발표되는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의 임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 전일제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일제학교 종사자의 급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재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본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교육감은 제4조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제5조 제2항의 협의회 운영, 같은 조 제4항의 자문기구 및 제7조의 지원센터 운영 등 전일제학교 관련 제반 사업과 관련하여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행정담당자를 각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들의 전일제학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 전일제학교의 모든 회계는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며, 전일제학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

최 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늘봄학교 정책 평가

1 교육과 돌봄

기본권으로서 교육과 돌봄

- ✓ 교육서비스
 - "모든 아동은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은 국가의 책임. 교육시설기반 공교육 체계(무상 또는 의무교육 체계 필요)
- ✓ 돌봄서비스
 - "모든 아동은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모든 아동이 **시설서비스**를 통해 돌봄을 받는 것? 학교 지역사회, 가족 등
 - 방과후 돌봄은 맞벌이 중심의 서비스(비이용자와의 형평성 확보 위해 이용료 부과 필요)

대상 및 공간/프로그램

- ✓ 정책 대상
 - 교육 서비스는 아동의 기본권으로서 모든 아동이 정책 대상
 -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노동권과 관련 - 일반적으로 맞벌이, 한부모 가구의 아동이 정책 대상
 - **늘봄학교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및 대상은? 전일제 학교(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은 역할이 다를 수 있음.** (늘봄학교 '26년 희망 초1-6 모두 수용 계획)
- ✓ 교육공간과 돌봄공간
 - 심, 놀이 등이 필요한 **돌봄공간은 교육공간과 분리 필요.** 학교내 독립된 돌봄 공간 확보 필요.
 - 돌봄 수요가 많은 학교의 경우 전용공간 확보 어려우며, 겸용교실은 돌봄, 교육 측면에서 모두 부적절
 - 교육프로그램 중심의 늘봄 - 돌봄은 심, 휴식, 놀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자원과의 협업 필요.

2 돌봄서비스로서의 늘봄학교

■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 ✓ 학교별 돌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 돌봄 수요가 많은 학교의 경우 공간 부족, 반면, 돌봄수요가 적은 학교의 경우 공간 여유
 - 지역별로 학교에서 돌봄수요 충분히 대응 어려워 지역사회 돌봄자원 활용 필요
 - 거점형 늘봄센터('23년, 7개 계획)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 방중 돌봄, 저녁돌봄, 연장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수요 대응 가능?
 - 학교운영시간과 돌봄운영시간의 불일치
 - 방학중 또는 저녁 돌봄 수요 대응 구체화 필요, 급·간식 제공 문제 상존(특히, 석식)
 -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긴급수요 대응 어려울 수 있음

■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 vs. 통합

- ✓ 이중화된 전달체계 고착화?
 - 외국과 달리 교육행정과 일반(복지)행정이 분리
 - 늘봄학교 확대는 학교중심 전달체계 구성을 의미(ex,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거점형 늘봄센터 등)
- ✓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vs. 학교?
 -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에 필요하나, 기존 지방정부 마을 돌봄 전달체계와의 중복성 검토 필요 (ex, 거점형 학교돌봄기관 vs. 서울시 융합형, 거점형 키움센터)
 - 학교에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과 연계 가능?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1 늘봄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 전담인력 확보

- ✓ 늘봄학교 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
 - 교사, 돌봄전담사 이외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필요.
 - 마을돌봄기관 및 학교 밖 아동·청소년 지원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필요
 - 독일 전일제 학교는 가정-학교-아동·청소년기관과의 협력적 관계의 틀에서 전일제 학교 운영하고 있으며, 전일제 학교로의 인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사회교육전문인력 등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정기섭, 2008)
 -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학교단위 전담인력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의 확대 검토 필요.**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직원 등 확대 예정이나 교육공무원 중심)

■ 아동친화적 돌봄 전용공간 확보

- ✓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교내 전용공간 확보
 - 방과후 돌봄 수요가 적은 경우, 방과후 돌봄서비스(초등돌봄교실)제공을 위한 학교내 전용공간 확보 가능
 - 방과후 돌봄 수요가 많은 경우, 겸용교실 보다는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학교공간리모델링, 모듈러교실 설치, 기존공간(특별실, 도서관, 일반교실 등) 활용 등은 겸용교실 중심의 대책.
 - **학교시설 복합화***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전용교실 확보 필요, **지역사회 돌봄자원과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2조 제1호에 다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

2 마을단위 돌봄 생태계 구축

■ 마을단위 돌봄협의체(늘봄협의체)를 통한 돌봄 생태계 구축

- ✓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돌봄협의체 구성
 - 학교와 지자체 돌봄자원의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각 단위별 돌봄협의체 구성이 중요
 - 현재는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돌봄협의체 구성만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지역중심의 효과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마을 단위 협의체 구성**이 필요
- ✓ **마을단위의 돌봄 협의체**
 - 서울시의 경우 마을단위 돌봄협의체구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 다만, 현실적 한계로 학교 단위 또는 동 단위 돌봄협의체 구성은 쉽지 않음
 - 지역여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단위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 학교와 마을 돌봄기관들의 협의체 구성 필요
- ✓ 돌봄협의체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조정·연계**
 - 지역사회내 학교와 마을 돌봄자원의 조정·연계 역할 수행자 필요
 - 권역형 다함께돌봄센터(ex, 서울시 융합형 키움센터)는 마을자원 중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통합 모형
 - **지자체 권역형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조정관**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자원 조정·연계
 - 학교내 돌봄지원실과 협력

3 권역단위 학교-마을 협력구조 마련

■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ex,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 ✓ 지역내 소규모 돌봄·복지 기관의 공간적 한계 극복
 - 지역내 소규모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적 한계 극복
 - 소규모 아동 돌봄·복지 기관에 인적·물적 자원 지원
 - 서울시 권역 또는 자치구별 아동의 욕구에 따른 특화 서비스 제공
- ✓ 지역내 기존 아동·청소년 시설과의 차별성 확보
- ✓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와의 연계 협력 강화 필요
 - 교육지원청 권역에 상응하는 지역에 거점형 키움센터 우선 확대

■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아동대상 종합서비스 제공 시설

- ✓ 장기적으로 자치시·군·구 단위의 아동대상 종합서비스 제공시설로서의 위상 확보
 - 지역내 영유아 또는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시설은 존재하나, 초등연령 아동 대상 서비스 제공시설은 부재
 - 장기적으로 자치시·군·구 단위의 초등돌봄(마을+학교) 종합서비스 제공시설 및 돌봄 지원 시설로 위상 확보

초등방과후 돌봄 재구조화

4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운영·지원 주체

돌봄체계 운영·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추진('24년 하반기)
 -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공간, 인력 확보 및 지자체,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규정)
- ✓ 학교 및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초등돌봄 관련 법안 필요
 - 온종일돌봄 체계 운영 ·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민정의원)

방과후 돌봄체계의 운영·지원주체는?

- ✓ 기존 교육부-교육청-초등학교 중심에서 중앙정부-광역시도-시·군·구 중심으로 운영주체 변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늘봄학교의 확대는 다시 교육(지원)청-초등학교 중심의 돌봄체계 확대를 의미
- ✓ 현재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공존 → 지역단위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통합적 운영체계 필요

감사합니다

“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

문경진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

“ ‘임기제 연구사’ 도입을 중단하고
국가 돌봄청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 ”

I. 늘봄학교 정책 쟁점

교육부는 지난 1월 2025년부터 시행기로 한 늘봄학교를 1년 앞당겨 2024년 2학기부터 전면 시행기로 했다.



전국 초등학교 2741곳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되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의되고 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이다.

일단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2학기에는 전국 6175곳 모든 초교에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누구나 원하면 모두'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늘봄학교를 도입했다. 부모의 돌봄 공백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채우고 양육 부담을 덜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늘봄학교는 지난해 8개 시도교육청 소속 459개 초교에서 먼저 시범 운영됐다.

1)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

[책임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

- 학교, 교원단체 :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의 업무부담으로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돌봄 및 방과후학교(현재 늘봄)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함을 주장
- 돌봄전담사 : 지자체 이관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신분유지의 어려움 존재, 돌봄의 질 저하 우려로 인하여 지자체 이관 반대 입장
- 학교와 마을의 연계 협력이 현재 쉽지 않은 상황

[공적돌봄과 가정돌봄의 필요성]

- 부모가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돌봄기관 확대하여 공적 돌봄 체계 확충 필요
- 부모가 아동을 직접 돌볼 수 있는 가정돌봄 확대도 중요함
- 가정돌봄이 가능한 제도 위에 노동정책 등의 정책적 노력 필요
- 공적 돌봄 강화, 가정 돌봄 보장의 정책적 지향 필요

2) 지금의 늘봄은 아동이 정말 원하는 것인가.

-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 아동이 행복하게 돌봄을 받을 권리에 대한 관심 소홀
- 돌봄 주체인 아동이 현재 돌봄 및 방과후에 '누구' 와 '어디서' ,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하고 싶은지를 세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

3) 초등 돌봄 내실화 및 질 관리

[안전한 보호 / 교육적 돌봄]

- 안전한 보호로서의 돌봄 제공과 교육적 돌봄 제공에 대한 논의 지속
-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요구 조사에서 1순위는 학교 내 돌봄이지만 돌봄의 내용 및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
- 단순한 아동 보호 관점을 넘어 쉽고 놀이, 학습, 체험, 특기적성활동 등 아동의 요구 및 필요

요에 따라 다양하고 의미있는 활동 필요성 강조

[초등 돌봄 유형의 질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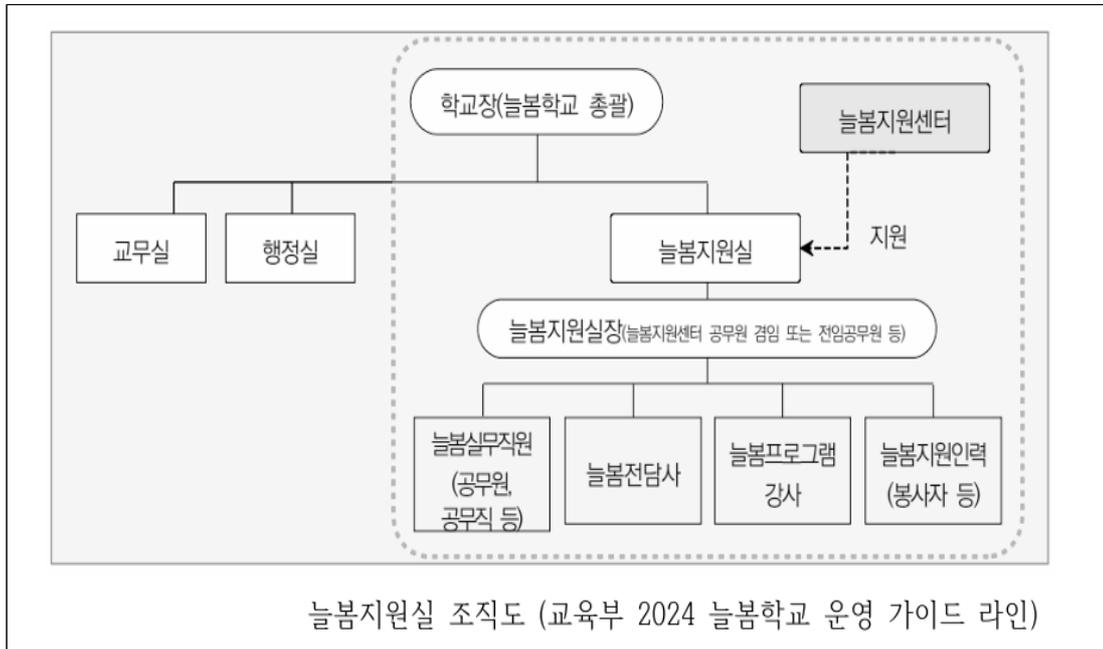
- 부처별로 돌봄정책을 분절적으로 추진
- 수요자 관점에서 돌봄 유형에 대한 혼란과 함께 수익자 부담 여부, 접근성 및 안정성 등으로 인한 불평등 야기
- 초등 돌봄 활동 간 프로그램, 전담인력, 시설 및 환경 등의 측면에서 질적 격차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지적
-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는 다양한 돌봄 유형은 수요자의 선택 확대라는 강점으로 작용하기보다 특정 돌봄 유형에 대한 선호로 작용
- 초등 돌봄 활동의 적정 기준 혹은 공통 기준(프로그램, 전담인력, 시설환경 등)을 마련하고 부처 합동의 주기적인 질 관리 체계 확립 필요

4) 돌봄 추진체계 개편

[필요성 및 원칙]

- 초등 돌봄 정책의 부처별 분절 추진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여 초등 돌봄 유형별 격차 해소와 질 높은 초등 돌봄을 확대하기 위함
- 지역단위에서 수요자의 실질적인 선택이 보장되도록 공공성 확충
- 돌봄 서비스 각각의 질이 상향 평준화된 상태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수요에 맞게 제공하기
- 초등 돌봄 수요의 탄력성에 기반한 공급 확대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단위 중심의 추진 체계로 개편
- 부처별 돌봄 정책의 고유한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제반 여건을 갖추어 가면서 순차적으로 추진
-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초·중등교육의 재원을 잠식하지 않아야 함

II. 임기제 연구사



늘봄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므로 지자체의 업무이다. 지자체의 업무가 학교에 들어와 있으니 관 리자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온 늘봄학교는 교육 부 정책이고 학교 업무에 교사가 제외되면 업무담당 주체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을 맡을 늘봄지원실장은 원래 외부 채용 인력이나 행정공무원이 맡 아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장기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서 교육전문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방침을 변경하여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2024년 하반기 중 임기제 장학사 채용 절차에 들어가 내 년 3월 이전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마다 설치기로 했던 늘봄지원실을 학교 규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설 치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 늘봄학교 운영을 전담하는 ‘임기제 교육연구사’라는 새로운 전문직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늘봄지원실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다.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희망에 따라 선발하게 된다. ‘임기제 교육연구사’ 로 임명된 교사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면 다시 교사 본연의 교육 임무로 돌아가게 된다.

주요 쟁점은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파견된 수만큼 교사의 추가 증원은 가능하지 않다. 늘봄을 전담하는 임기제 교육연구사에 교사를 임명하고 이를 교사 정원과 연계하면 사실상 이름 바뀌서

현장 교사를 늘봄학교에 투입하는 것과 같다.

1) 늘봄 임기제 연구사(늘봄지원실장) 배치, 운영 가능할까

첫째, 기준과 수의 문제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장학사 등)은 시·도교육청 지방직 수에 준해서 뽑는 총액 인건비 제도 안에 있어서 무분별한 증원이 어렵다. 또한, 임기제 연구사 배치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장학사)의 일정 부분 증원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임기제 연구사도 6급 상당의 TO안에 들어간다. 즉, 6급 상당의 TO를 선발한다는 것은, 기존 교육전문직(장학사)을 적게 선발하거나, 교육행정직 주무관(6급)을 적게 선발하여야 대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최소 수백 명이 났는데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을 임용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또한, 임기제 연구사는 결국 교사로 돌아가는데, 교사는 국가직 TO라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TO를 줄이고 있는 기재부의 뜻과도 상충된다. 지방직(장학사, 교육연구사)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가직인 교사로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응변이 될 뿐이다.(교사 과원 발생 우려) 시·도교육청의 일반 장학사도 증원이 어려운 이유와 유사하다. 이들은 국가직인 교감·교장 TO와 연동되기에 무분별하게 늘릴 수가 없고, 기존 승진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둘째, 임기제 연구사를 학교에 배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기존 교육전문직원은 학교교육기관이 아닌 교육청인 행정기관이나 연수기관에 배치했다. 학교에 교육전문직원인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를 배치할 근거는 없다. 나중에는 학교에 파견교사나 행정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다.

셋째, '임기제 연구사'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안이 마땅치 않고, 제도적 한계가 있다. 임기제 연구사가 학교에 배치되더라도, 방학 중 근무를 해야 하고 41조 연수를 쓸 수도 없다. 교육청 소속이기에 근무시간도 9시 출근 6시 퇴근이다. 교사와 근무형태가 다르고 오히려 행정실과 근무조건이 같아진다. 그래서 학교소속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임기제 연구사' 보다 '파견교사' '행정교사'가 된다.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 늘봄학교의 업무는 교사의 업무가 된다.

넷째, 정책의 지속성의 문제다. 과거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등 특정 업무를 임기제 장학사로 선발했다가, 별도의 전문전형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다.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지속성의 이유가 컸다. 임기제의 특성상 잠깐 머물다 가기에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기제 연구사는 기간 연장 자체도 불허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지속적으로 늘봄 업무를

맡길 이들을 찾기도 쉽지 않다. 3년 이상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상위 자격증인 교감 자격 취득의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기제 연구사의 근무 기간인 2-3년 후에는 업무 단절이 생길 여지가 농후한 것이다. 더군다나 2-3년 후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감소로 시·도교육청도 많은 인력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섯째, 늘봄은 사실상 교사들의 업무가 될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여러 차례 간담회에서 늘봄 학교는 교사들의 업무가 아니고, 교사들은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기제 연구사는 교사가 잠깐 와서 다시 교사로 가는 방식이기에, 결국 교사의 업무이고 늘봄 연구사가 만든 공문, 사업 등은 결국 학교 내 교사들의 업무로 연계-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외부 인력 등과 일부 연계는 되겠지만 주 업무는 교사들에게 부여될 확률이 크다. 관료제의 특성상 누가 문서를 기안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이다.

Ⅲ. 다시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늘봄업무

2024년 2월 교육부는 '2024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4년 2학기부터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와 실무직원을 배치해 늘봄지원실장은 행정인력이 겸임한다고 밝혔다. 또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운영해 교사는 방과후·돌봄 업무를 완전 배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은 늘봄지원실 업무 담당·관리, 늘봄학교 관련 민원 관리와 갈등 조정, 구성원 간 역할 조정 등 업무를 맡는다. 정해진 임기 동안 교육연구사 신분으로 실장을 역임한 후 임기가 종료되면 기존 교원 직책으로 복귀한다. 당초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모든 행정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놨지만 시행 2개월 만에 계획을 뒤집어버린 셈이다.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노조)이 늘봄학교 확대를 발표한 정부를 향해 운영 주체의 명확화, 운영 예산 투명화, 교육전문가 전담을 요구했다. 교육노조는 성명을 내고 “늘봄학교에 교원을 배제한다는 순간 보육이라 선언한 것”이라며 “보육을 교육부가 주관하는 것은 모순이다. 학교에 들이는 순간 보육이 아닌 교육이 되는 것이기에 교원 배제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늘봄이 보육인지, 교육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늘봄지원실 운영 주체의 명확화 ▲늘봄지원실 운영 예산 투명화와 함께 ▲늘봄지원실을 교육전문가에게 맡길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노조는 성명을 통해 ▲늘봄이 학교에 오는 순간 교육 ▲늘봄지원실 등

학교조직 법제화 ▲ 늘봄지원실장에 지방공무원을 보하는 순간 교장자격 부여 ▲ 늘봄지원실 행정인력에 공무원이 아닌 정규 공무원으로 구성할 것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라남도 여수 소노캠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임기제 연구사로 전직한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및 기간제 교사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교원 인사제도의 혼란과 선발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문제점들을 교육부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교육연구사 외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 모색,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른 자율성 확대 등 교육 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늘봄학교 운영 개선 방안을 각 교육청에서 논의해 추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1) 늘봄지원실이 있어 늘봄업무에서 교사가 배제되는가?

행정실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맞지만 전국의 수많은 교사는 행정업무를 감당하느라 몸살을 앓고 있다. CCTV 관리, 놀이시설 안전 점검, 외부 인력 채용 및 수당 지급, 방과후 학교 회계 업무 등 크고 작은 행정업무를 여전히 교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각 지역 교육청에서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서울교사노조에서 연구한 ‘서울 초등학교 교사직무 되찾기를 통한 학교업무 재구조화 방안연구’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2023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이 실제 학교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58.1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다른 인력들을 고용하는 것은 과연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선 과거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적 운영과 교원업무경감 대책 등의 이유로 행정실무원(학교비정규회계직), 과학실무원(과학실험보조) 등이 학교 현장에 배치되었다.

현재는 교육공무직으로 칭하는 추가 인력이 배치되면서 관련한 업무가 다소 나누어지긴 했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업무 마찰로 인한 노노(勞勞)갈등이다. 한 예를 들면 모 학교에서는 각 실에 설치된 ‘정수기’ 관리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자, 학교에서 정수기를 아예 없애기도 하였고, 각 학교에 돌봄전담인력이 있지만 경북 등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돌봄 업무를 여전히 교사가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이어지는 교육공무직 파업 때마다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진

다. 결국 누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일까?

다시 말하지만 늘봄지원실은 교원 업무 배제를 위한 것도,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위해서도 올바른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가 교사 업무 배제를 앞세웠음에도 현장 교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Ⅳ. 돌봄청 설치

1) 늘봄은 저출생을 해결할 수 없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 대선공약이었던 '초등전일제'가 이름만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집에서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해 초등전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돌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초등전일제 교육'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20대 국정과제 중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다. '초등전일제'라는 명칭이 초등학생들을 하루 종일 학교에 붙잡아 두는 듯한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22년 12월 '늘봄학교'로 개명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의 운영을 전담하는 교육공무직인 '돌봄 전담사'가 있다. 처음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 생겼을 때 돌봄교실의 전반적인 업무를 교사가 담당했다. 학교에 돌봄전담사가 있어도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경우가 많았고 돌봄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간식 등을 구입하기 위해 품의를 올리고 주문하는 행정 업무를 교사가 했다.

학생들이 돌봄교실에서 시간만 때우다 가면 안 된다며 돌봄교실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했고 내부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를 올리고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한 후 수당 지급과 관련한 행정 업무를 도맡아 했다. 돌봄전담사가 공무원이 되고 근무시간이 늘어난 후에도 꽤 오랜 기간 교사가 그 일을 했다.

돌봄교실 업무가 온전히 돌봄전담사에게 넘어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제 겨우 돌봄의 일을 돌봄전담사에게 넘겼는데 늘봄이라니. '늘 돌봐준다'고 해서 늘봄이니 당연히 돌봄전담사의 일이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 늘봄은 돌봄과 다르단다. 늘봄은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란다. 학교니까 교사가 담당해야 한단다.

1월 24일 교육부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2024년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사들의 반발을 예상해서 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마련한다고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출생아 수가 8년 연속으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컬럼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율과 인구 감소가 유럽의 흑사병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다.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꼭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다.

그런데 학교의 돌봄 기능이 강화되면 출생률이 올라갈까? 늘봄학교는 저출생을 해결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심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자녀를 낳았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저녁 늦게 찾으러 가는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 아는가?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을 찾아 동동거리고 직장에 폐를 끼쳐 몸 둘 바를 모르게 된다.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니 나라에서 책임지고 대신 키워준다는 것이 과연 해답일까?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부모의 경력을 단절시키고 사회 진출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다. 나라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에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닐까.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는 정책은 대한민국을 소멸의 길로 이끌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땀질식 처방이 아니라 본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각 가정을 온전히 세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는 것이다.

2) 늘봄학교는 전일제학교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주요 내용으로 초등 전일제 교육을 계획했다. 2022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초등전일제학교지원법안'(가칭)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2년 7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을 늘리는 '초등 전일제 학교' 추진방안을 2022년 10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등전일제'라는 명칭이 초등학생들을 하루 종일 학교에 붙잡아 두는 듯한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22년 12월 '늘봄학교'로 개명을 하게 된다.

전일제학교(늘봄학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일제학교(늘봄학교)는 시행기관 구성원간 충분한 논의 없이 공약만 내세워 학교에 책임을 떠맡기는 정책이다. 돌봄에 대한 책임과 업무를 학교로 전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수요와 관심, 불만에 대한 총알받이로 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는 소통 및 여건조성 없이 책임을 떠맡기는 교육정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해온 지 오래되었다. 일방적으로 넘어온 정책들로 교사의 업무는 증가하고 결국 업무증가는 수업 연구를 어렵게 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트려 왔다. 더불어 일반교실을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로 사용하고 있어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다. 전일제학교(늘봄학교)의 운영은 지자체로 이관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규수업 시간 이후 학생 돌봄 지원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국가 업무다. 현재 지자체(정부 포함)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아동복지법)와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센터(청소년기본법)를 설치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모두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 의한 수업과 교육이 이뤄지는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은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에 부응한다.

셋째, 202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온 마을의 참여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발제자 김형모 경기대 교수는 “늘봄학교의 책임 주체를 논하기 전에 지역 사회 자원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학교돌봄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파편적인 돌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였던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보좌관은 “현재 한국의 방과후학교는 일종의 교육활동인데 유럽의 방과후학교는 여가시간이다. 스웨덴 등 유럽에서는 레저타임센터를 지자체가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라며 한국형 방과후학교의 개념과 취지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송이 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사회구조의 전체적인 개선없이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물게 하는 등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려가 있다”라며 “양육자와 달리 아동들은 학교 공간을 선호하지 않는다. 아동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넷째, 여성의 사회 진출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도 돌봄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더불어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돌봄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 영역이다. 따라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법적 근거가 갖춰져 있는 지자체로 이관해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3) 늘봄학교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가정·학교·지역사회의 협력으로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비전으로 하겠다는 늘봄학교는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2025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늘봄학교의 현재를 진단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고민해보자.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는 외면]

늘봄학교는 시범 운영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교사의 행정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다. 늘봄학교가 단위학교 중심 운영으로 이루어져 학교와 교사의 업무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우려에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추진방안의 핵심은 지역교육청을 운영 주체로 전환해 전담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교육청 중심(방과후늘봄지원센터)으로 전환하고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업무를 경감시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5월 17일 시범 운영 이후의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늘봄학교 담당교사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해 사실상 학교와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전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늘봄학교 시행 이후 업무에 대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교사에게 전가된 과도한 늘봄학교 행정업무, 돌봄 학생들의 하교 시간 차이로 인한 안전 문제, 공간의 부족으로 돌봄 겸용 교실 증가, 돌봄 프로그램의 질 문제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돌봄의 ‘양적 확대’만을 과시하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전일제 학교.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운영]

돌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전일제학교'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크게 참고가 된 것이 독일의 전일제학교 모델이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같이 기존의 반일제 학교에서 돌봄 공백 및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일제학교가 시작되었다. 즉, 사회적 돌봄체계 안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독일의 방과후돌봄정책은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독일의 방과후돌봄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공적 시스템에 의해 작동된다. 즉,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의 중심에 있는 독일형 사회 보장제도가 교육복지 부문을 포섭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적으로 불리한 아동들에게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하는 중심 주체도 학교가 아닌 별도의 공적 기구인 청소년청이 된다. 즉,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주로 담당하며 학교와는 기능적으로 역할 분업체계에 놓여 있는 청소년청이 중심이 되어 학교, 지역 아동·청소년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에서 방과후돌봄 사업이 진행된다.

독일은 정규 교육활동 이후의 아동·청소년 안전망 과제를 학교 교육이 아닌 기타의 공적 사안으로 간주하여 타기관(청소년청)에서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들이 기능과 역할의 과부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독일의 방과후돌봄정책을 위한 구축 작업은 주로 학교와는 별도의 학교 밖이라는 공간적으로 구분된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학교 밖 돌봄과 교육은 외부의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하에 운영된다. 그리고 실제 운영 주체들은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철저히 공공기관에 소속된 준공무원 이상의 안정된 지위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셋째, 언어교육이나 문화교육 등을 통해서 결핍된 삶의 경험을 보충해 주는 독일의 방과후돌봄 장치들은 전통적으로 '자아형성'을 의미하는 Building 개념에 뿌리를 둔 독일의 전형적인 교육철학으로부터 기인한다. 학교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총체가 곧 자아형성의 소재가 될 수 있기에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결핍된 경험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정책적 방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청이 제공하는 방과후돌봄 등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데 목표를 둔다. 풍부한 여가 및 문화시설 제공, 음악 및 미술 등과 같은 문화 예술적 체험, 여행과 같은 낯선 자연 및 문화와의 접촉 등이다.

독일에서 교육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요소의 개선, 문화적 체험과 같은 경험망의 확충을 포함한다.

[무작정 아이들을 오래 잡아두는 돌봄정책]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가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늘봄학교’ 정책은 어떠한가? 늘봄학교 정책의 도입과 운영의 과정에서 ‘학부모의 돌봄 수요’는 있지만, 학교생활과 구분되는 ‘아이들의 방과후 삶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루 대부분을 학업으로 보내는 많은 공부량 탓에 공부와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늘고 있다. 무너진 삶의 균형 탓에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상처받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에서 10시간 이상을 보내게 되는 아이들이 일과 내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휴식하고, 의미 있는 배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

휴식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방과후돌봄이 무작정 아이들을 오래 잡아두는, 휴식없이 교육만이 시행되는 장소가 되어서도, 막연히 의미 없이 노는 시간만을 제공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된다. 돌봄의 질과 방향에 대해 살피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돌봄 내 교육활동이 정규 교육과정 내 활동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교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를 수용하였다. 예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교사보다 많은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들이 근무한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 또한 커지고 있다. 학교돌봄의 확대에 앞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법적·제도적 인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교실은 온종일 돌봄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다. 대부분의 초등돌봄교실은 학생들이 정규수업을 마친 뒤 그 교실을 다시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겸용 교실의 비율이 높다. 교실은 단순한 강의실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 전시물이 전시되고, 학생의 개인 물건이 보관되며 교사에게는 방과후에도 학생들의 평가결과를 정리하는 곳이다. 또한 수업을 준비하는 곳,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실, 보충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즉 수업이 끝났다고 하여 빈 공간이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학업 못지않게 중요한 체육·예술 분야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적절하지 못한 공간이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돌봄공간 확보를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을 구축하고

학교복합시설(수영장, 체육관, 돌봄시설 등)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마련 계획은 전무하다.

학교돌봄확대와 함께 가정 돌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저녁 있는 삶’ 정책 연구를 병행하겠다고 했던 이주호 교육부는 여전히 “진행 준비 중이다”라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육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스웨덴에서의 방과후돌봄은 국가와 부모가 공동의 책임과 협력으로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서방유럽(독일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 미국까지도 돌봄의 방향이 아동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 즉 별도의 돌봄정책, 별도의 돌봄기관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국가와 사회가 가정과 부모에 대하여 적극적인 양육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중심의 돌봄을 중요한 기저로 삼고 있다. 실제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의 퇴근시간은 방과후돌봄서비스가 주로 제공되는 프리티즈헴(레저타임센터)의 종료시간에 맞추어지며, 프리티즈헴이 종료되는 시간 이후에 대부분의 아동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초등학교 늘봄학교가 저녁 8시까지 운영되니 마음 놓고 ‘야근’하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광고가 씩씩하기만 하다.

방과후돌봄정책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하되 궁극적으로 교육복지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에 기반한 세부방안을 안정적이며 실효성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 방과후돌봄정책의 중핵이 아동의 안전한 보호에 있는 것인지, 교육활동의 연장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여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역과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돌봄의 책임이 학교에 있는 것인지 지자체 등 지역사회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도 존재한다. 방과후돌봄의 기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현재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겠지만, 그 어느 경우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2025년 늘봄학교 전면 실시라는 무리한 일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교육 주체들과 함께 최선의 대안을 찾는 사회적 합의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4) 방과후학교 해결방법

방과학교에 대한 해결의 원칙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돌봄과 방과후학교는 연계 또는 통합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는 방과후, 돌봄 운영으로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자체 이관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셋째 지금처럼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강사를 모집하는 방식으로는 방과후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없다. 넷째 돌봄전담사 노조들은 초등돌봄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의 민간위탁으로 이어질 것이며 돌봄전담사의 고용안정이 하락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다섯째 방과후강사노조는 법제화를 통한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초등 전일제학교의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여섯째 학부모들은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학교 또는 학교인접 장소에서 방과후 과정이 진행되길 원한다.

대안을 논의하면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21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지원)청 주도의 ‘거점형 돌봄’을 운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거점형 돌봄’은 교육(지원)청에서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고 학교 또는 외부시설을 ‘거점 돌봄기관’으로 운영하여 돌봄과 방과후수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학교돌봄과 달리 행정기관이 인근 학교의 수요를 통합하여 직접 운영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 중구청은 9개 국공립초등학교 돌봄교실과 학교 밖 돌봄센터 7곳을 직영으로 운영해왔다. 중구청은 초등돌봄 이용 학부모 9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인기가 있어 신청 인원이 모집입원을 훨씬 초과했다고 올해 초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현 중구청장은 이를 시교육청 및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임 구청장의 치적 지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전담사 노조는 지자체 운영은 결국 민간 위탁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뒷받침했다.

해외의 사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내용이다.

영역	미국	독일	핀란드	스웨덴	일본
운영주체	▶ 지방자치, 주정부 관할	▶ 지방자치, 주정부 관할	▶ 강력한 중앙집권주의 전통이 쇠약해지면서 지방분권 강화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통합	▶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주관	▶ 지방자치체제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통합
현황	▶ 안전 확보(범죄로 부터의 보호), 기초학력보강, STEM 교육으로 방향성 변화 ▶ 학력보충 중심 운영	▶ 이주배경 아동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아동들을 위한 사회적 통합 지원 필요 ▶ 맞벌이 부부 돌봄 필요성 증가 ▶ 학업능력 신장 프로그램 ▶ 기존 양질의 교육 제공	▶ 맞벌이 부부, 여성 사회 진출 확대 ▶ 성인 돌봄 시간 동등한 확보 ▶ 중대 학생 안전 학년(방과전·후 활동) 보장	▶ 보편 복지 추구 ▶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래밍, 예술,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여성 경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 주 5일제 도입 대응 ▶ 저출산 대응 ▶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맞벌이 '초등 1학년' 장벽' 극복)
운영형태	▶ 평균 1주 13.8시간, 5일 운영 ▶ 1년 32주 운영	▶ 상시적으로 지속형 교육 ▶ 학교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 시간	▶ 연간 570시간 또는 760시간 돌봄 제공(일평균 3시간 또는 4시간, 방과전후 모두 포함) ▶ 오전 7시~오후 5시 운영(아침돌봄+방과후돌봄)	▶ 오전 6시30분~오후 5시(오전 돌봄 운영시) 또는 수업중후-오후 5시 ▶ 연중무휴(방학, 공휴일 포함: 단 학교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하교 이후~오후 6시 ▶ 토요일과 방학의 경우, 오전 9시~오후 6시

(한국교육개발원, 해외 방과후돌봄정책 사례분석, 2019)

5) 초등 돌봄·방과후 해결 방향

초등 돌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아래와 같이 해결의 방향을 제시한다.

학교에서 양질의 방과후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담당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 기관은 공공기관이어야 한다. 돌봄과 방과후는 공적영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 따라 돌봄과 방과후의 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 행정기관의 관리체계안에 편제되어야 한다.

운영은 지자체가 담당토록한다. 돌봄은 초등학생만이 아닌 유아-아동-청년-노인 생애주기별로 지원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인력 및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과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안정적인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돌봄청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관리하에 지자체가 담당한다. 현재 학생 대상 돌봄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학교돌봄터(지자체), 다함께돌봄(복지부),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로 분리되어 운영 중에 있다. 단일한 중앙행정기관의 체계하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면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이 돌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담당하는 돌봄에 대해서는 지자체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상시 전일제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고용과 처우 개선은 돌봄에 관한 법률로 보장한다.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돌봄서비스 역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운영장소는 수요를 고려하여 학교의 여유공간, 지역사회 공간들을 연계하여 활용한다. 지자체가 학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기관, 민간의 공간들을 파악하여 수요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초등돌봄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발달단계 및 정규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기존 돌봄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고 참여학생들의 자치활동, 개인 자율활동, 문화체험등을 고르게 배치한다.

돌봄을 체계화 및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야간노동을 당연시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하지 않는 아동이 비만일 위험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5배가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혼자 식사하는 아동일수록 결식도 많고 부정적인 건강상태를 보인다는 결과도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저녁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률이나 단협으로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거나 기업 스스로 선도적으로 개선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국가돌봄청 설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은 더 소중하고 절실해졌다. 그동안 돌봄정책은 ‘공적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큰 그림 없이 땀질식으로 이뤄져 왔다. 국가는 돌봄정책을 계획과 체계 없이 미봉책으로 진행해왔고 그 결과 교원의 업무부담문제와 돌봄노동자의 고용문제, 돌봄의 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갈등과 진통을 빚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 국가 돌봄정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윤석열 정부는 돌봄청을 도입해야 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진 돌봄부서를 모두 통합하고 예산과 집행을 관할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아동중심 돌봄체계를 세우고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단기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간 거점 돌봄센터를 만들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이 학교돌봄에 대한 통합관리체제를 만들면, 이후 돌봄청으로 이관을 할 수 있다. 이후 돌봄청은 지자체 운영의 마을돌

봄을 통합하여, 돌봄수요와 공급, 그리고 돌봄의 질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

돌봄청이 설립되기 전에 시도에서는 각각의 돌봄을 통합하는 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도단위에 맞는 공적돌봄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협력을 위해 마을돌봄협의회를 모든 동에 구성하여 주민기획과 참여예산제를 통해 교육청 직영 학교돌봄과 지자체 직영의 마을돌봄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전일제학교(늘봄학교)는 학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국가의 재정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고,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해결하려는 안일한 발상이다.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돌봄청을 도입하고, 충분한 질과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참고 문헌]

※ 본 발제문의 Ⅱ.임기제 연구사 ~ Ⅳ.돌봄청 설치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연구소장 최선정)의 ‘임기제 교육연구사 도입 중단 및 돌봄청 설치’의 내용을 인용

김현희(2024). 돌봄 정책 전반의 흐름과 늘봄지원실장(안) 고찰

최선정(2024). 임기제 연구사 도입 중단하고 국가돌봄청 설치하라

참고# 돌봄청 도입 3단계 방안

1단계는 초등돌봄에서 교사업무를 분리하는 단계이다. 현재 초등돌봄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집행하고 있다. 초등돌봄사의 고용은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며 초등돌봄사 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교사는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당연히 초등돌봄사는 초등돌봄을 운영해야 하지만, 현실은 초등돌봄의 운영계획과 공문처리 및 예산처리와 집행을 초등교사가 맡고 있다. 돌봄전담사에게 초등돌봄의 운영을 맡기려면 8시간 종일근무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2023년 10월 25일 현재 '교사에게 돌봄업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시도교육청은 15개 지역이다. 단계적으로 2개 지역이 돌봄전담사의 종일근무제와 초등돌봄 교사업무 배제는 실현될 것이다.

다음 단계는 초등돌봄의 운영을 학교에서 분리하는 단계이다. 초등돌봄의 운영을 학교에서 분리하는 방법은 학교 내 돌봄교실과 학교밖 돌봄서를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초등돌봄을 교사업무와 교육과정 운영과 분리한다. 그리고 국가와 시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마을 연계 돌봄서를 구축하는 하는 것이다. 돌봄전담사의 고용은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단계적으로 운영과 고용을 돌봄청으로 고용을 이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구분	2단계 운영분리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돌봄업무 배제 ■ '교육청 직영 돌봄서'로 전환(학교단위 운영에서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 : 교육청(교육지원청) - 대상 : 모든 초등학교 - 유형 : 1) 학교내 돌봄터(학교돌봄터 교육청 이관) 2) 학교밖 돌봄서(교육부의 거점형돌봄센터 방안과 동일,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과 연계) ■ 시급한 겸용교실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청 직영 학교밖 돌봄서를 설치해야함. ■ 교육청 직영 돌봄서 신설(운영주체 :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에서 돌봄전담사 관리 - 학부모(학생) 직접 신청 - 학생 신청에 따른 돌봄처(학교, 교외) 배정 - 교육청차원의 프로그램 질 관리

3단계는 초등돌봄의 운영과 공간을 학교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단계로 교육부에 전담부서를 편성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직영 돌봄센터에 대한 통합 운영체제

가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즉 교육부의 책임하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되는 돌봄센터에 대한 통합운영이 되는 단계이다. 시도차원에서는 방과후돌봄센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와 마을 곳곳에 돌봄과 방과후 센터가 만들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돌봄은 학교에서 운영과 공간이 완전히 분리된다. 남은 과제는 이 운영을 교육부에서 계속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3단계
돌봄청 이관, 지자체 운영 - 돌봄청이 돌봄을 통합하는 돌봄체계 마련 - 경찰청과 같이 돌봄서를 마련 - ‘돌봄서’에서는 해당 돌봄체계를 운영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돌봄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돌봄은 마을과 지역의 인프라와 결합할 때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와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국가 돌봄청의 신설이 필요하다. 돌봄 기관들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어렵고, 각 기관의 질관리 및 사회적 수요와 필요인력의 공급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기 어렵다. 돌봄청을 신설해야 한다.

돌봄청의 신설은 초등돌봄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의 돌봄은 국민이 생애 전체를 통틀어 꼭 필요한 돌봄의 사회적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며,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돌봄청을 경찰청과 비교해 보면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설치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다. 돌봄청은 중앙에 돌봄청을 두고, 광역단위에 지방돌봄청, 시군구에 돌봄서, 동단위에 돌봄소 학교와 마을단위에 돌봄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초등돌봄의 운영과 공간을 학교에서 분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는 돌봄청을 신설하여 운영과 공간을 학교와 분리하여 구축하게 하여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그리고 다양한 돌봄체계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어른들의 필요에 의해 아이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장시간 학교에 머물게 하지 않고, 또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가정과 개인에 떠넘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방안이다.

교육부가 돌봄 공간 확보의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학교에 돌봄 겸용교실을 늘여온 정책을 비판해 왔다. 왜냐하면 우선 초등학교 교실은 온종일 돌봄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며, 수업을 마친 후에도 교사의 수업 연구, 학생 상담, 보충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수업연구와 학생 지도 등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 완전 배제를 명시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돌봄은 국가의 책무이다. 현재 새롭게 제기된 돌봄의 요구를 공적 영역인 학교가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장기적으로 돌봄은 국가 책임 하에 예산을 확충하고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돌봄 정책에는 놀이와 배움과 쉼의 터전인 마을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야 한다. 아울러 이를 실현할 지자체의 집행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의 돌봄 받을 권리를 국가가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양육자 입장에서 바라본 혼란의 늘봄학교

권영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초1, 3개의 돌봄을 이용해보다.

초등학교 1학년 양육자로 아이와 함께 혼란의 늘봄학교를 경험했습니다. 학교적응도 쉽지 않았을 아이는 3월 입학부터 4개월 동안 세 가지 돌봄을 이용하였습니다. 주변의 학원, 지역돌봄센터 등이 부족한 환경에서 최대한 학교 돌봄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학교도 돌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교육지원청의 지침에 최대한 따르고, 유휴 교실이 있는 조건이었기에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사례

- 1학년 2개의 학급 (약 45명의 학생)
- 기존 돌봄교실 1개(1, 2학년 함께 이용)

		돌봄교실(3월 초~)	늘봄교실(3월 중순~)	틈새돌봄(5월 중순~)
1 학 기	이용 자격	맞벌이, 다자녀 외	돌봄교실 대기자	돌봄교실 대기자
	학년	초1, 2학년	초1	초1
	프로그램	하루 1개- 보드게임, 독서토론 외	하루 2개- 학교체육관 전래놀이	하루 2개 - 숯놀이, 댄스
	학교 시간	오후 5시(대부분 3시하교)	2시 20분 또는 3시 이후	4시 20분-5시
	간식	간식- 수요자부담 구매	간식 시간 X	간식- 직접 준비
	운영 방법	초등보육돌봄전담사	학교 직영	교육지원청 위탁
	인원	20명(초1-9명)	12명	9명

	방과 후	돌봄교실 중 방과 후	돌봄교실 중 방과 후 (수업 시간 중복)	돌봄교실 중 방과 후 (수업 시간, 프로그램 중복)	
여 름 방학	명칭 및 운영	기존과 동일	통합 운영 *지역자원활동 돌봄교실		
	운영 기간	*돌봄교실 방학 (5일간) 제외	(7월 방학부터~)		
	급식 간식	개인지참	개인지참		
	운영 방법	초등보육전담사	교육지원청위탁(위탁업체 변경)		
	운영시간	9:00-14:40	(방학 중) 8:20-17:30 (학기 중) 13:00-18:00		
	방과 후 연계	수업시간, 프로그램 충돌하지 않게 배치(휴식 또는 독서활동)			
	프로그램	보육 중심으로 하되 무상 2시간 프로그램 (동요, 토론, 종이접기)	무상 2시간 프로그램 (음악감상, 책놀이, 창의수놀이, 전래놀이, 미술, 하브루타, 두뇌개발기억력)		
	신청인원	13명(초1- 8명)	17명		
	근거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제 2022-33호)	- 2024년 늘봄학교 추진 준비협조 요청(교육부 방과 후 돌봄정책과-4183,2023.12.28.) - 2024 경기형 늘봄학교 기본계획(지역교육협력 과-205,2024.1.6.)		
예산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14,280,000원			
운영체계 (학부모참여)	학교운영위원회	X	X		
안전관리 계획	-체계 구체적으로 마련 - 학교 책임으로	- 체계 없음 - 교실 나선 이후 학교 책임 없음 명시	- 체계 없음 - 교실 나선 이후 학교 책임 없음 명시		
주요 소통과 알림	- 개인 전화/교실 전화 - 운영위 심의 안전 (방과 후와 함께)	- 개인 전화/교실 전화 - (타 돌봄 정보를 아 는) 통합 알림 X - 학과 연계 없음	- 개인 전화 - (타 돌봄 정보를 아 는) 통합 알림 X - 학과 연계 없음		

“누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늘봄학교

학교 시간이 길고, 프로그램이 좋아 보이는 쪽으로 옮기며 세 가지를 겪는 과정에서 느낀 바는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해주는 이 없고, (한 달 뒤, 방학 같은) 미래의 돌봄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학교마다 각기 다른 모양의 진통과 돌봄교실의 모양을 하고 있어 물어보고 참고하기도 힘듭니다. 기존의 돌봄교실에 틈새와 방과 후를 통합한 단일체제라는 늘봄학교는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정보는 교육부 정책을 다루는 뉴스였고, 얼마 채 지나지 않아 도교육청, 시교육지원청, 학교, 돌봄교실 순으로 안내가 전해졌습니다. 돌봄에 대해 의견이 올라가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학교가 한 학기 내내 다양한 돌봄을 운영한 결과 비효율과 혼란을 경험하고 늘봄, 틈새교실을 통합하기로 한 것입니다. 간식 통합구매 건으로 운영위 안전으로 심의되어 양육자가 사안을 접한 것도 덤이었습니다. 아직은 이 정도입니다.

바람직한 아동 늘봄학교 정책 방향은

학교에서의 돌봄은 아동 권리 중심으로, 아동 인권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위탁업체의 서류나 한 사람의 역량에 아동의 쉼 권리, 놀 권리, 학습할 권리, 안전할 권리, 행복할 권리 등은 말할 수 없습니다. 교육, 돌봄의 주체들이 돌봄의 현장에서 실현될 방법을 궁리해 나가야 합니다.

늘봄학교의 운영체제에서 학교, 양육자, 아동 모두 소외되어선 안 됩니다.

현재 학교는 급작스레 이뤄지는 정책에 장소를 빌려주며 협조하는 것을 최선으로 하고, 양육자는 모든 것이 결정된 뒤 주어진 정보에서 선택하는 걸 최선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지원청도, 도교육청, 교육부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객인 상황에서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운영 체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산과 집행은 투명하게 제대로 쓰여야 합니다.

급하게 집행된 정책으로 프로그램이 중복되기도 하였고, 어딘가는 부족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늘봄학교로 예산이 몰려 다른 곳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이 배분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늘봄학교가 지속가능할 것입니다.

한 명의 아동에게 교육과 돌봄이 종합적으로 제공되고, 소통창구가 하나로 정리되길 바랍니다
양육자들이 교과과정에 대한 관심과 궁금함 못지 않게 돌봄 시간을 어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과 돌봄이 한 아동의 성장에 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돌봄 제공은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돌봄프로그램과 운영은 아동에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 선정 시 예산과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에 신경을 쓰기에 앞서 아동 성장기와 바람에 맞춘 돌봄 프로그램과 운영인지 살펴야 합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인 돌봄권과 양질의 돌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아동에게는 안전하고 아동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해나갈지, 갈등 발생할 때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다양한 주체들의 돌봄이 가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마련되어야 할지, 건강한 급, 간식을 위해 정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지, 전담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 역량 강화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고민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담긴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차별과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공정한 돌봄과 늘봄 정책

이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

1. 우리들의 현재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가족 구성과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후·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 발생으로 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4년 초등돌봄교실이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한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시기에 가정과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본질적으로 배움과 돌봄의 절대적인 공간이며,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저출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2023년 국가책임, 공적돌봄을 위한 정책으로 늘봄학교 도입 발표와 늘봄운영은 20년간 학교 내에서 초등보육을 전담하고 있던 초등보육전담사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먼저, 초등돌봄교실의 대기자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는 달리 줄속적으로 시행하여, 신설 학교에 업체 위탁, 정년퇴직자 자리에 거점형 늘봄으로 채우는 등 본격적으로 오후돌봄교실을 외주화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또, 현재 늘봄학교는 때우기식 인력채용으로 학교현장은 각종 단기, 단시간 계약직(틈새, 저녁돌봄 등 단시간, 기간제교사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설익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초등보육 전담사와 아동과 학부모는 정책 추진 과정에 배

제되고 있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어떻게 공적 돌봄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우리들의 문제와 한계

1) 늘봄 정책으로 인한 어려움

교육부는 초등학교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이른 하교에 따른 돌봄의 공백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일 2시간 동안 무료로 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6년까지 전학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많은 문제점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

가. 기간제 교사 채용 문제

- 행정업무를 맡을 기간제, 중등교사와 퇴직 교장 및 정년 교사 채용
-> 늘봄 행정업무 수행이 어려워 초등보육전담사에게 업무가 넘어옴.
- 일부 학교는 미채용(2학기에 늘봄행정인력 채용예정)
->기간제가 없으므로 당연히 초등보육전담사의 업무라고 강요하고 있음.

나. 방과후강사 채용 문제

- 돌봄의 질과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방과후강사 채용을 내걸었지만 강사 미채용
- 일부 지역은 방과후강사 채용절차도 없이 교사가 담당하는 학교도 있음.
- 혹은 초등돌봄교실 강사(35,000)를 수당으로 현혹하여 늘봄학교(60,000) 강사로 유인
-> 수당의 차이로 인해 방과후강사가 늘봄강사로 전환함
-> 돌봄교실 강사 채용이 어려워 짐

다. 신설 학교의 민간업체 투입

- 신설 학교에는 오후돌봄교실을 마련하지 않고 민간업체(위탁)를 투입하여 외주화를 하고 있음.
- 정년(퇴직)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오후돌봄교실을 축소하고 민간업체(위탁) 추진계획수립

라. 늘봄 이해를 제대로 못한 학부모 혼선과 불만

- 학기 중에 시간맞춤형으로 운영시간이 2시간
- 방학 중에 미실시하는 학교가 많음.
- 방학 중에도 운영하는 학교는 2시간만 운영
- 대대적인 홍보와 실재는 다름
-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데 짧은 시간 운영으로 불만 표출

마. 거짓, 우롱, 보여주기식

- 3/29 동탄 00초 윤석열대통령 방문(일일강사)으로 인해 오후돌봄교실 명패를 늘봄교실 명패로 임시로 바꾸어 달라는 학교 → 이후 다시 오후돌봄교실 명패로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봄학교로 명패 안착

바. 비정규직과 행정직 공무원들의 불만

- 업무 범위와 인력 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떠넘김

사. 2시간을 위한 많은 인력투입, 혈세낭비

- 시간 맞춤형 2시간을 위해 늘봄학교 시행?
- 기간제+방과후강사+보조인력+하교 지도 담당 인력을 각각 채용

2) 17개시도 초등돌봄교실 체계 미구축으로 인한 어려움

가. 전국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차별

지역마다 초등보육전담사들의 근무형태가 다르고 운영시간이 다르다. 교사의 질을 결정하듯이 돌봄전담사의 질이 돌봄의 질을 담보한다. 특히 방학 때는 짧은 근무시간으로 오후 2,3시가 되면 돌봄운영이 끝나기 때문에 온전한 돌봄교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부모들은 방학만 되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돌봄전담사들을 8시간 상시 전일제로 전환해서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돌봄교실로 통일되어야 한다.

* 전국 시도교육청 돌봄전담사 근무 현황 (인원/명)

지역	8시간	7시간	6시간	5.5시간	5시간	4.5시간	4시간	4시간 미만	계
강원	-	-	390		-	-	-	-	390
경기	1,487	5	1,492	-	-	-	8	-	2,992
경남	911	-	14		-	13	-	-	938
경북	-	-	130		458		58	1	647
광주	156	-	-		136				292
대구	10	20	344		2		1	-	377
대전	414	1	-	-	1	-	-	-	416
부산	301	2	28		226	-	-	-	557
세종	-	-	222		-	-			222
서울	534	-	1,215	-	-	-		-	1,749
울산	263	-	-		-	-	-	-	263
인천	630	-	2	1	3		1		637
전남	46	-	583	-	-	-	-	-	629
전북	-	-	-		-		738		738
제주	-	-	237		-	-			237
충남	-	-	-		563	-	-	-	563
충북	340	1	103		1	-	1		446
합계	5,092	29	4,760	1	1,390	13	807	1	12,093

<자료 출처 : 교육부>

나. 전국 초등보육전담사 인건비 차별

전국적으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가치가 실현되지 않고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학교 내에서도 다른 임금체계로 인해 전담사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초등돌봄교실이 초등돌봄전담사의 제대로 된 일터로 거듭나고 아이들에게 안정되고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구현되어야 한다.

* 전국시도교육청 (인건비)

구분	1유형 (서울)	1.5유형 (전남)	2유형
기본급	2,186,000원	2,081,900원	1,986,000원

다. 전국 초등보육전담사 전문성 미인정

20년간 초등돌봄교실의 전문인력으로 아이들을 돌봄과 교육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근로조건은 열악하다. 입직 조건이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수임에도 자격수당은커녕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하찮은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보며 교사들이 하던 행정업무까지 도맡아 오롯이 돌봄전담사가 돌봄교실 운영계획부터 예산편성집행, 급간식업체 선정, 프로그램계획 및 강사채용 등 돌봄교실에 관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있기에 돌봄전담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자격증 수당과 직급체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라. 직종명칭에 따른 혼란

늘봄전담사는 교사의 늘봄학교 업무를 배제하고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다.

늘봄학교 계획 및 행정업무,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준비·운영·관리, 강사 선발 및 관리, 참여 학생 관리 등을 맡는다.

마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처럼 보여지나 현 초등돌봄전담사의 역할이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늘봄전담사와 현 오후 돌봄전담사의 명칭 통일로 인해 행정업무와 보육이 분리된 것처럼 보여지나 오히려 학교 내 교사와 혼란만 야기시키며 학부모와 아이들의 혼란도 우려된다.

[참고1]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의 심각한 차별현황

돌봄교실의 심각한 차별 현황		
구분	늘봄학교	돌봄교실
인력	기간제,강사,전담사,보조인력	초등보육전담사
근로시간	기간제 8시간	6시간, 8시간
예산	72,975,088천원	44,718,054천원
학생수	0~소수 인원	최대 22명
대상	누구나 (1~6학년 희망자)	맞벌이, 한부모, 조손 가정 등
운영시간	방과후~15시 이전	방과후~17시, 방과후~19시
프로그램강사비	60,000~80,000	30,000~35,000
강사수업시간	40분	50~60분
급간식	무상	유상
방과후프로그램	무상	유상
행정업무	기간제, 늘봄실무사	초등보육전담사
보육	늘봄전담사, 보조인력, 강사	초등보육전담사
공간	전용	전용+겸용다수
연구실	있음	없음
책임주체	불분명	초등보육전담사
채용 계획	단기인력 채용	채용 계획 없음

※ 경기도 늘봄학교와 오후돌봄교실 비교

3. 우리들의 미래(제언)

1) 초등보육전담사의 전일제 실현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며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므로 돌봄교실에서의 돌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니터링부터 다양한 활동 후 지역으로, 학원으로 연계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처럼 오후 5시 이후 돌봄 수요를 반영하려면 준비, 정리 등 초등보육전담사의 적정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초등보육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토대로 2022년부터 경기,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충북 등의 지역은 근무시간이 **8시간(전일제)으로 확대**되거나 순차적으로 확대되었다.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는 곧 초등보육전담사들의 근무시간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적으로 상시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 상시전일제는 돌봄교실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시대적 요구와도 귀결된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국책기관들도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이나 질적 개선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 임금과 처우 개선

- 17개 시도에 종사하는 초등보육전담사 1만 2천여 명 중 최대인원인 3천여 명의 전담사가 경기도에서 종사하고 있다.
- 17개 시도 중 서울, 전남, 충북, 세종은 자격증 소지자로 전문성을 인정하는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천, 대전, 울산, 전남, 경남은 전체 8시간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다.
- 그리고 경기 초등보육전담사들의 기본급은 서울보다 20만 원, 전남보다 10만 원 적게 책정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은 13만원 행정업무수당 받고 있는등 전국이 상이한 임금 및 처우를 적용 받고 있다.
- 2022년 임금협약 타결 이후에도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약 600억 원이나 남았고, 아래 「전국 초등보육전담사 임금 및 처우현황 비교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국 초등보육전담사들의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3) 공적돌봄 강화! 법제화!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학교에 도입된 지 20년째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없이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초등돌봄운영길라잡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이나 운영 프로그램 매뉴얼이 없이 초등돌봄전담사의 개인의 역량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초등보육전담사에게 아동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일을 맡기는 것은 관리자의 업무태이며 책임 소지 또한 불분명하다. 교육부의 권고대로 방과후지원센터(늘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학교-전담사 간의 협의기구, 교육지원청-전담사 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아동 중심의 돌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무상 급간식을 추진해야 한다.

- 돌봄전담사의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를 통하여 돌봄교실의 질적인 제고를 도모해야 함.

- 장애아동이 방과후과정 참여 시 특수종일반 또는 초등돌봄교실에서 별도의 전문 인력에게 보육을 받아야 함.
- 초등보육전담사의 독박, 종일 보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식시간, 보조 인력 배치를 통해 업무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함.
- 초등보육전담사의 부재로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내 대체 인력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대체 인력풀(장기, 단기)을 운영해야 함.

2024년 상반기 시범 운영한 늘봄사업은 하반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의 기능을 교수.학습을 넘어 학교내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자와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케어를 위해 교육복지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늘봄사업과 초등보육사업 사이 차별과 차이가 들어나지 않는 초등보육교육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빠르게 법제화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초등보육전담사 임금 및 처우현황 비교표

	지역	유형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행정업무 수당	상여금	맞춤형복지비	건강검진비	
1	강원	2	6시간(방비)	1,489,500	150,000	○	○	1,700,000	X	1,000,000	650,000	300,000(격년)
2	경기	2	전일제	1,986,000	150,000	○	○	1,700,000	X	1,000,000	800,000	200,000(격년)
			6시간제	1,489,500	150,000	시간비례	○	시간비례	X	시간비례	800,000	
3	경남	2	전일제	1,986,000	150,000	○	○	1,700,000	X	1,100,000	800,000	200,000(격년)
4	경북	2	6시간	1,489,500	150,000	시간비례	○	시간비례	X	시간비례	650,000	300,000(격년)
			5시간	1,241,250	150,000	시간비례	○	시간비례				
			4시간	993,000	150,000	시간비례	○	시간비례				
5	광주	2	전일제	1,986,000	150,000	○	○	1,700,000	X	1,000,000	650,000	200,000(격년)
			5시간	1,241,250	150,000	시간비례	○	1,700,000				
6	대구	2	전일제	1,986,000	150,000	○	○	1,700,000	X	1,000,000	650,000	200,000(격년)
			6시간	1,489,500	150,000	시간비례	○	1,700,000				
7	대전	2	전일제	1,986,000	150,000	○	○	1,700,000	X	1,000,000	650,000~700,000	200,000(격년)
8	부산	2	전일제	1,986,000	150,000	○	○	1,700,000	X	1,000,000	650,000	200,000(격년)
			5시간	1,241,250	150,000	○	○	1,700,000	X	시간 비례		
9	서울	1	전일제	2,186,000	150,000	○	○	1,700,000	30,000	1,000,000	650,000	200,000(격년)
			6시간	1,639,500	150,000	시간비례	○	시간비례	X	750,000	487,500	
10	세종	2	6시간	1,489,500	150,000	○	○	1,700,000	37,500	1,000,000	700,000	200,000(격년)
11	울산	2	전일제	1,986,000	150,000	○	○	1,700,000	X	1,000,000	650,000	300,000(격년)
12	인천	2	전일제	1,986,000	150,000	○	○	1,700,000	X	1,000,000	650,000	200,000(격년)
13	전남	나	전일제	2,081,900	150,000	○	○	1,700,000		1,000,000	650,000	200,000(격년)
14	전북	2	6시간	1,489,500	150,000	시간비례	○	시간비례	X	시간비례	650,000	350,000(격년)
15	제주	2	전일제	1,986,000	150,000	○	○	1,700,000	X	1,000,000	650,000	300,000(격년)
			6시간	1,489,500	150,000	시간비례	○	1,700,000				
16	충남	2	5시간	1,241,250	150,000	○	○	1,700,000	X	1,000,000	650,000	200,000(격년)
			전일제	1,986,000	150,000	○	○	1,700,000				
17	충북	2	전일제	1,986,000	150,000	○	○	1,700,000	130,000	1,000,000	650,000	200,000(격년)
			6시간	1,489,500	150,000	○	○	1,700,000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문

손재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

■ 질의

강은희 위원님과 정재훈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질의 드립니다.

-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로서의 늘봄학교는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종류의 서비스가 아니다.
- 초등교육·돌봄은 전문가(기존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가 맡아야 할 영역이다.
- 따라서 초등교육·돌봄 서비스의 확대 시점에 교육과 돌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늘봄학교 교육 인력에 대한 지위와 처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늘봄학교 비전”에 관하여

- 세계 최고 수준이 되려면 누구나 만족하는 프로그램 질이 제고되어야 함
- 누구나 만족하는 프로그램의 바로미터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의 질적 수준임
- 프로그램 강사의 질적 수준이 확보되려면 교육 현장 전문가로서 역량 있는 분들이 유입되어야 함
- 역량 있는 분들이 유입되려면 안정된 강사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발제자 강은희 위원님이 제시한 개선 방안과 정재훈 교수님의 기대효과 모두 적절

2. 교육을 하는 돌봄, 돌봄을 하는 교육으로서의 새로운 변화와 융합에 관하여

[질의] 늘봄학교는 “지금까지 교육인력 각 주체들이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지원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변화다”라고 하셨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금 늘봄학교 현장은 맞춤형 늘봄교실 프로그램과 기존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이 따로 개설, 병행운영되면서 시간과 공간, 인력에서 상호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결국 방과후학교 축소로 이어져 수강인원이 감소하고 과목이 폐강되는 등의 현상이 실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결국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로의 융합이 아니라 교육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포장, 유도됨으로써 한정된 공간과 시간을 두고 교육인력들로 하여금 불안정 노동, 외주화된 노동, 값싼 노동으로 전략하게 만드는 경쟁적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아무리 과도기라고 하지만 기존 돌봄과 방과후교실을 단일체제로 융합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이중적으로 운영되는 행태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이러한 성과위주의 밀어붙이기식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3. 방과후 돌봄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하여

[질의] 「(가칭) 늘봄학교지원특별법」에는 방과후강사를 포함한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약 또는 고용형태에 대한 발제자님의 의견은?

[방과후강사노조 의견] 현재 각 교육청은 길라잡이를 통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를 의식해서 방과후강사와 2년 이상 연속 자동계약을 꺼리고 있는데, →→ 이 문제는 「(가칭)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시 강사 계약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2년 기준)과 달리 정하는 법조항 하나만 넣으면 해결 가능(기간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3항1호 참조).

[붙임 1]

늘봄학교 시행으로 인한 방과후수업 수강인원 및 강사료 감소 실태조사 결과

I.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17개 시도 방과후학교강사 736명
- 조사 내용 : 늘봄학교 시행으로 인한 방과후수업 수강인원 및 강사료 감소 실태조사
- 조사 기간 : 2024년 4월 4일(목) ~ 19일(금)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 조사 기관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분석 : 이승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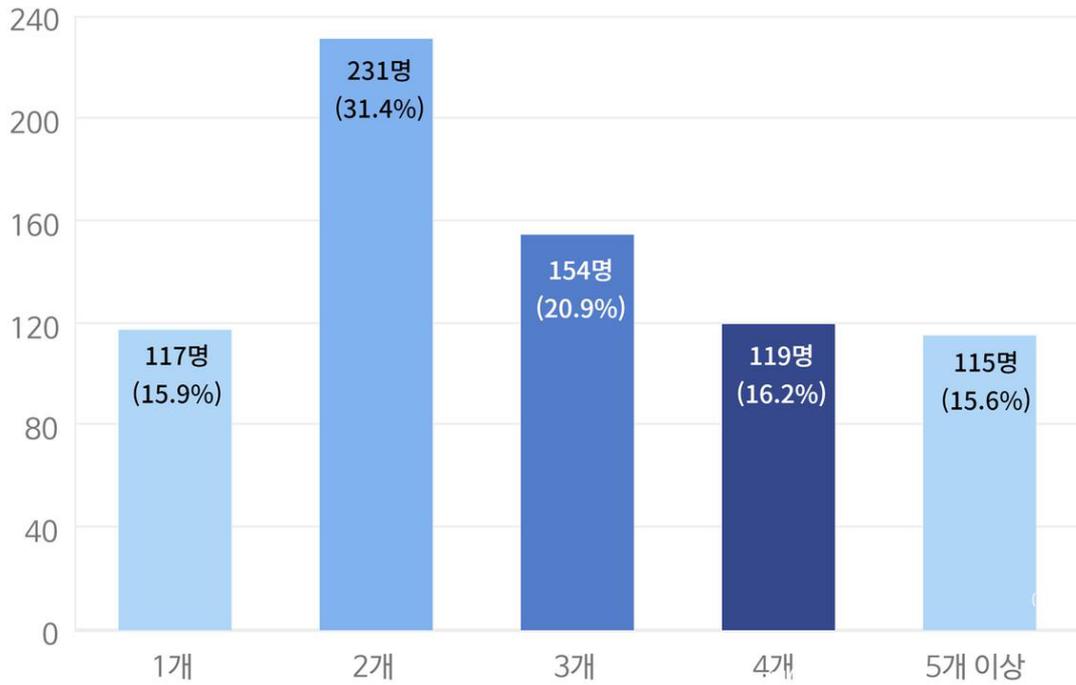
II. 조사 결과

1) 응답자 기본 정보 및 늘봄교실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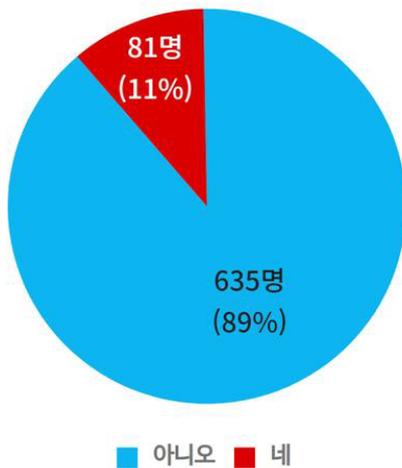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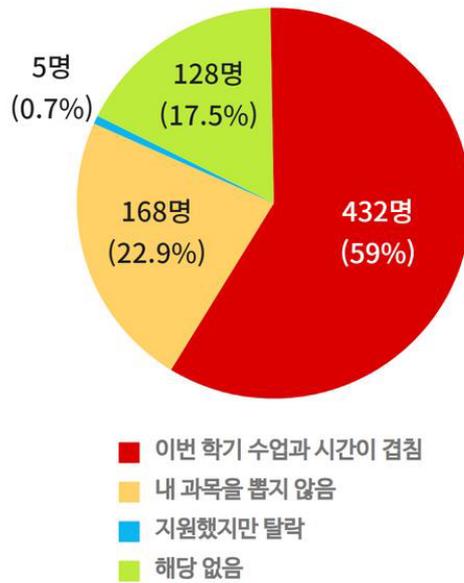
출강하시는 **학교의 수**는 몇 개입니까?



늘봄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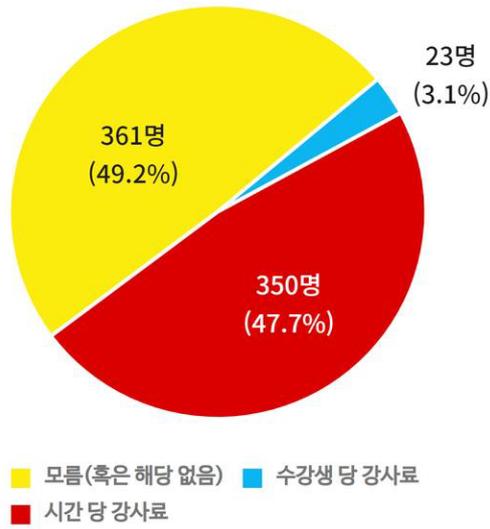


늘봄수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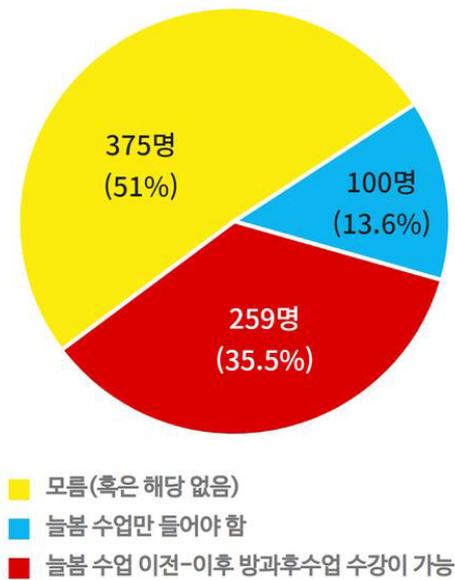


2) 늘봄학교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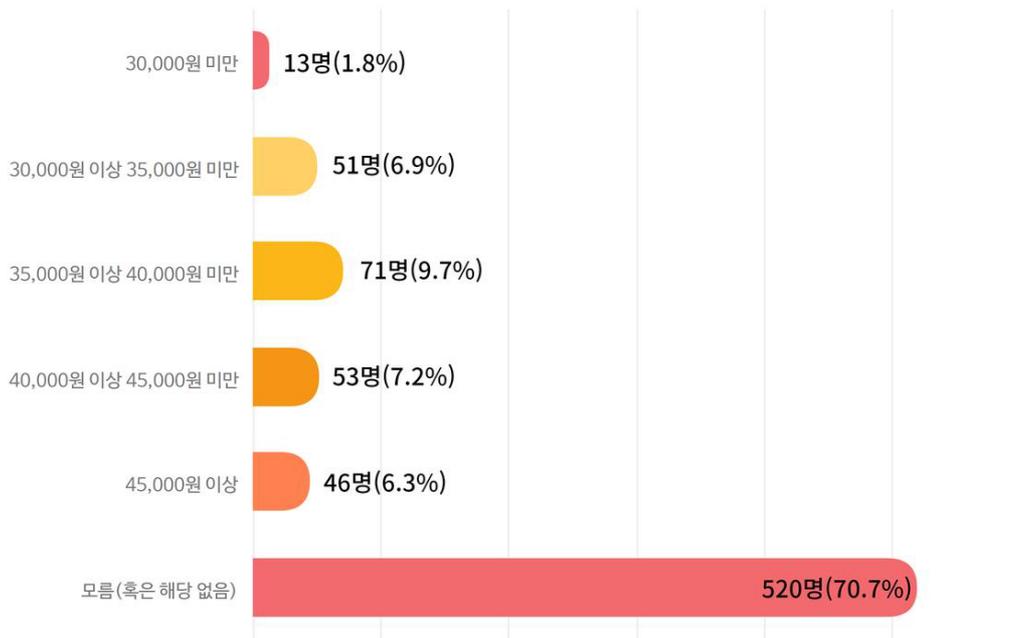
선생님께서 출강하시는 학교의 늘봄교실 수업 강사로 체제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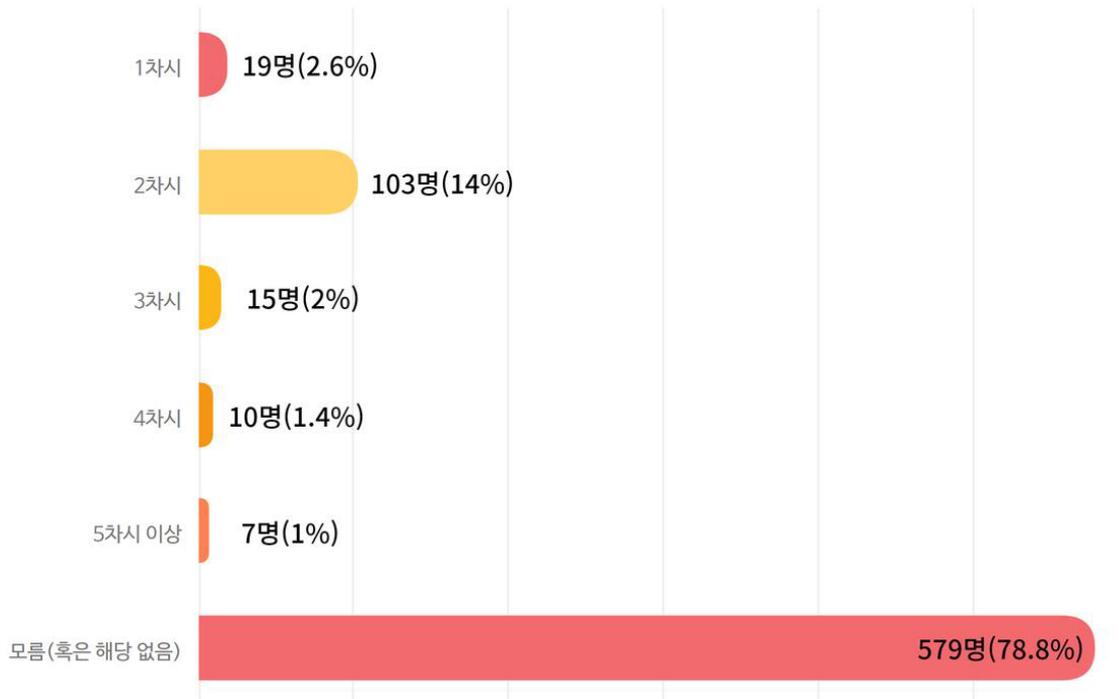
선생님께서 출강하시는 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늘봄 프로그램(13~15시) 외에 방과후수업 수강신청이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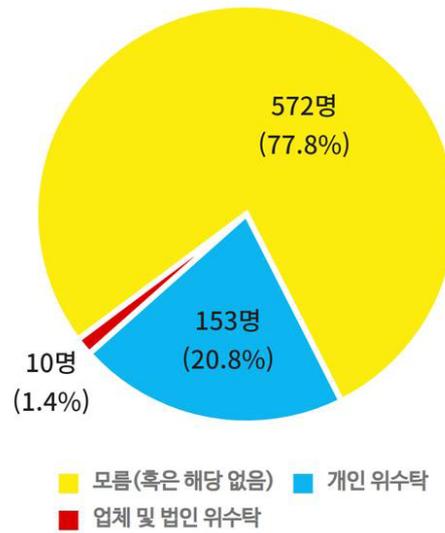
선생님께서 참가하시는 **늘봄교실 강사료**는 어느 정도입니까?(시간 당 강사료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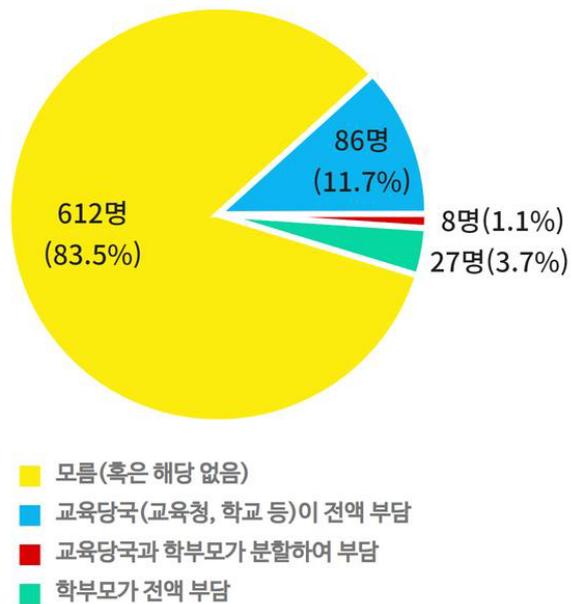
선생님께서 참가하시는 **늘봄교실 주당시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늘봄교실 수업 계약 소속은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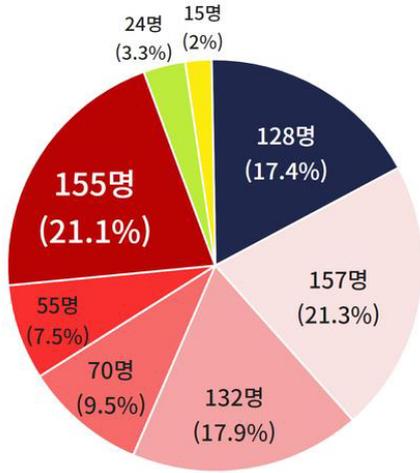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늘봄교실 수업에서 재료가 필요한 경우,
재료비 비용 부담 주체와 방식은 어떠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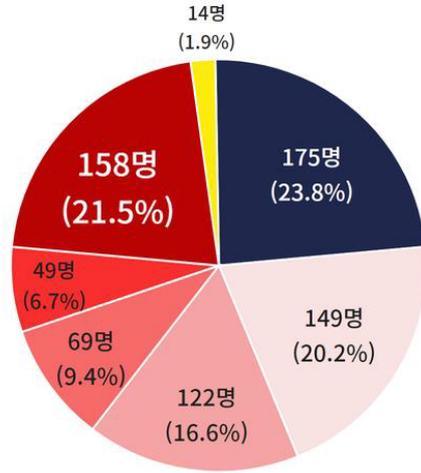
3) 늘봄학교 시행으로 인한 변화

작년대비 초1 수업
수강 인원 수 변화



- 감소없음
- 10% 이상~20% 미만 감소
- 20% 이상~30% 미만 감소
- 30% 이상~40% 미만 감소
- 40% 이상~50% 미만 감소
- 50% 이상 감소
- 너무 많은 감소로 폐강
-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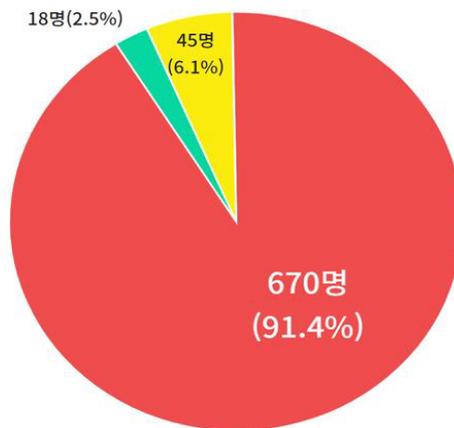
작년대비 초1 수업
강사료 수입 변화



- 감소없음
- 10% 이상~20% 미만 감소
- 20% 이상~30% 미만 감소
- 30% 이상~40% 미만 감소
- 40% 이상~50% 미만 감소
- 50% 이상 감소
-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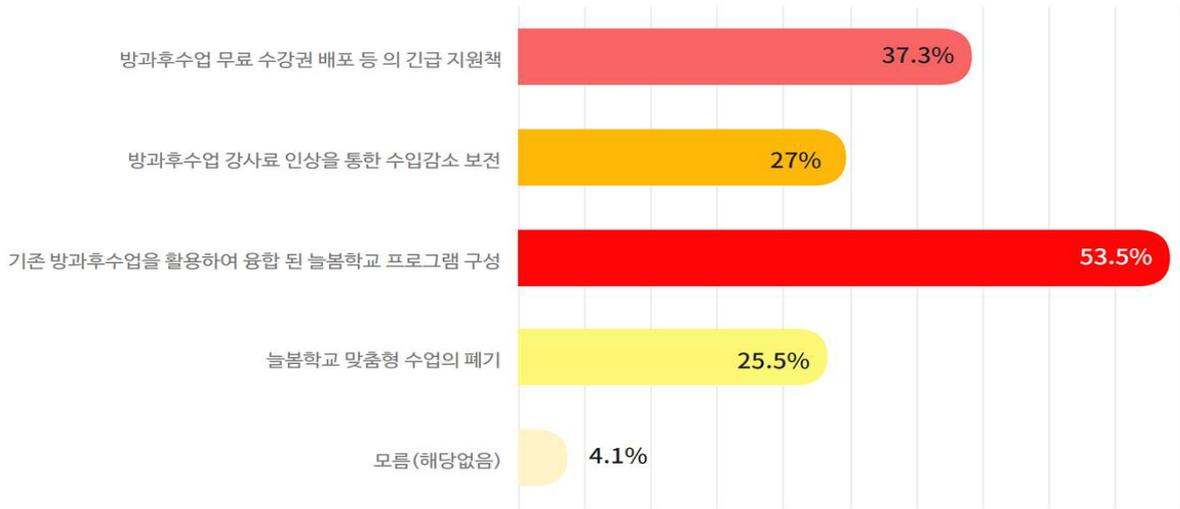
4) 늘봄학교 제도 시행에 대한 방과후강사들의 의식

현재와 같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늘봄교실과 방과후수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 예측하십니까?



- 늘봄이 확대되고 방과후는 대책 없이 축소되어 강사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 늘봄으로 일원화되면서 방과후수업과 늘봄수업이 조화롭게 융합될 것이다.
- 모름(혹은 해당 없음)

늘봄교실 프로그램은 무료인데다 시간까지 방과후수업과 겹치기 때문에
수강생 및 강사로 수입 감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중치 적용)



5) 결론

- 기존에 방과후수업을 진행해오던 방과후강사들이 **구조적으로 늘봄학교에서 배제, 소외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주 수업 대상인 **초등학교 1학년 수강생, 수강료 감소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음.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만 시행되는 맞춤형 수업이 교육부의 계획대로 전 학년으로 확산되면 방과후강사들의 피해는 건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방과후강사들은 방과후수업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소외되는** 현실 속에서 방과후수업의 미래에 대해 **크게 비판하고** 있음. 이는 강사들의 공교육 현장 이탈을 가속화하고 결국 **방과후수업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돌봄 책임 강화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기존 방과후수업 프로그램에 중대한 질적 하자가 존재하거나 방과후강사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피해가 아님.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교육당국이 준비했어야 할 정책적 안전장치가 미흡했기에 발생한, 100% 교육당국 귀책사유의 문제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방과후강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정책적 고려 및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음.
-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 당국의 현장 중심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방과후강사들을 현장의 주요 주체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임.** 늘봄학교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도 역시 학교 밖 전문가들의 주장이나 견해만이 반영되었을 뿐 현장에서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과후강사들의 참여나 의견 청취가 보장되지 않았음.
- 방과후강사는 공교육이 다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을 보조하면서 사교육비 절감에 일조해왔음. 그러나 그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된 존중과 처우를 받지 못했음. 심지어 늘봄학교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이 밀려나고 있음. 방과후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과후강사를 엄연한 교육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강사들이 안정적인 삶을 기반으로 양질의 방과후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해야 함.**

- 방과후강사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으로 “기존 방과후수업을 활용하여 융합된 **늘봄프로그램을 구성할 것(53.5%)**”, “**방과후수업 무료 수강권 배포 등의 긴급 지원책(37.3%)**”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교육당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 사태에 대한 조속한 긴급 구제책과 정책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